

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10.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목 차

1. 국가 현황	1
가. 국가 개요	1
나. 역사	3
다. 정치	9
라. 사회 문화	17
마. 경제	24
바. 지방제도	30
사. 교민현황	32
2. 산업재해 현황	37
가. 산업재해통계	37
나. 산업재해 발생현황	38
3. 재해예방의 법적 체계	39
가. 법률적 개요	39
나. 노동법 주요내용	39
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61
라. 소결	62
4.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주요활동	63
가.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63
나. 여성과 연소자 보호규정	64
다. 처벌 제도	66

< 별첨 자료 >

[별첨 1] 주요 휴일 및 대사관 67

< 참고문헌 > 69

1. 국가 현황

가. 국가개요

- 국 명 : 타이 왕국 (Kingdom of Thailand)
- 정 체 : 입헌군주제(1932.6월 혁명 이래)
 - 국가원수 : 푸미폰 국왕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 * 차크리 왕조 제 9대왕 (1946년 즉위)
- 정치형태 : 내각책임제
 - 총 리 : 아피싯 웨차치와 (Abhisit Vejjajiva)
 - * 제 27대 총리 (2008.12월 취임)
- 의 회 : 양원제(상원 150명, 하원 480명)
- 국 경 일 : 12.5(Bhumibol 국왕 탄신일)
- 수 도 : 방콕 (Bangkok : 인구 약 1,006만명)
- 면 적 : 51.4만 Km² (한반도의 2.3배)
- 인 구 : 6,304만명 (2007)
 - 인구 증가율 : 0.7%
 - 평균 수명 : 남 70세, 여 75세
 - 남녀 성비 : 98 / 100
- 민 족 :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기타
- 종 교 : 불교(94.6%), 이슬람교(4.6%), 기독교(0.7%), 기타(0.1%)
- 언 어 : 타이어 (공용어)
- 문 맹 율 : 6%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대별됨 (3월~5월 고온, 6월~10월 우기, 11월~2월 비교적 저온)
 - 년평균 기 온 : 28℃ (최고 32.5℃, 최저 23.7℃)
 - 년평균 강우량 : 1,600 mm
 - 년평균 습 도 : 79% (최고 94%, 최저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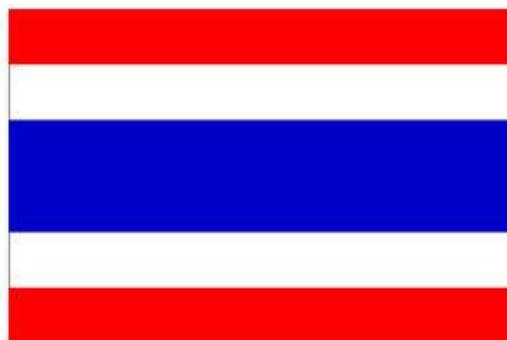
- 서울과의 시차 : -2

- 화폐단위 : Baht (1Baht = 100Satang), US\$1 = 36Baht(2009.3월)

- 주요자원 : 천연고무, 타피오카, 쌀,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천연가스

- 주요 경제지표(2008년)
 - 국 민 총 생 산 : 2,700억불
 - 1인당 국민소득 : 4,073불
 - 경 제 성 장 륜 : 2.6%
 - 수 출 : 1,778억불
 - 수 입 : 1,787억불
 - 외 환 보 유 고 : 1,110억불
 - 총 외 채 : 617억불 (2007년말)
 - 실 업 륜 : 1.4%

- 국 기 : 민족, 왕실, 종교를 각각 상징하는 적색, 청색, 백색 등 3색으로 되어있음(1927 채택)



나. 약 사

1) 민족의 기원과 이주

-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태국지역의 인류 거주 흔적은 2만년전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기원전 4천년전 태국 중부 Chao Phraya강 유역에서 거주하던 원주민이 쌀농사를 시작
- 기원전 2세기경 성립된 힌두계의 Funan 왕국이 현 캄보디아, 태국지역 및 말레이 반도 북부에 걸쳐 영향력 행사
 - 6세기경 Funan 왕국 몰락으로 남부 버마의 Mon 왕국 및 메콩강 유역의 Khmer 왕국 등장
 - Funan 왕국의 몰락 후 태국 중서부지역은 6세기-10세기까지 Mon족의 불교문화(타와라와디, Dvaravati 문명)가 지배
- 타이민족의 기원에 대하여는 중국 기원설, 인도네시아 기원설, 토착민족 기원설 등이 있으나, 기원전 2세기경부터 중국 서남부 운남지역에 거주하던 타이족(Thai)이 중국계 Nanchao국(남조국, 7세기경 건립)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며, 수세기에 걸쳐 남쪽으로 이동, 현재의 태국 북부 및 라오스 북부, 버마 북동부에 걸쳐 부분적으로 소국가를 형성(Yonok, Shans 등)하였다는 중국 기원설이 유력
 - 일부는 오늘날 라오스를 형성하고, 다른 일부는 Maenam 계곡을 따라 남하 Chao Phraya강 유역에 정착, 오늘날의 태국을 형성
 - 라오스와 태국은 원래 같은 종족인 바, 라오스는 Ailao란 족명으로 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이주족들이 스스로를 Thai족(자유인, 해방자를 의미)이라 지칭한데 연유
 - . Thailand는 'Land of Freedom'을 의미
-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Nanchao국(남조국)이 멸망하면서 타이족이 현재의 태국 지역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타이족의 독립 소국가 등장
 - 중부지역의 Sukhothai 왕국(1238), Chiang Mai 지역의 Lannathai 왕국(1296년), 북서부 Phayao 왕국, 남부해안 지역의 Lopburi 왕국
- 14세기까지 현재 태국 영토의 대부분은 Khmer의 영토였고 타이족은

Khmer에 조공을 바치면서 거주

2) Sukhothai시대(1238-1378)

- 13세기에 출현한 여러 타이 소국가중 가장 번성, 태국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타이왕조의 기틀 형성
 - 1238년 타이족 일파의 수장 Phra Ruang이 Khmer 왕국의 북서부 거점인 Sukhothai를 정복, 건국
 - Sukhothai는 '행복의 시작(dawn of happiness)'이라는 의미

- 3대 Ramkhamhaeng 왕(Rama The Great) 재위시(1277-1317) 최대의 번영 구가
 - 중국에 조공하였으나,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 북부 등 주변국가를 복속
 - Khmer 문자를 변형시켜 타이문자(산스크리트어 계통) 창제
 - 스리랑카로부터 소승불교 도입

- Ramkhamhaeng왕 사후 쇠퇴, 1378년 Ayutthaya 왕조에 멸망

3) Ayutthaya시대(1350-1767)

- 1350년 Mon 왕국 지배하의 타이계 Uthong국 왕자(Rama Thibodi, 1350-1369)가 전염병을 피해 ChaoPhraya강 하류 Lopburi 지역에 정착, Ayutthaya 왕국 건설
 - 불교 공인(1360년) 및 법전(Dharmashaster) 공포
 - 왕실용어·의전 등을 Khmer에서 도입, 채택

- 14세기말 Sukhothai 왕국 등 주변국가를 복속시켜 왕국의 기반 조성

- 9대 Trailok왕 재위시(1448-1488) 왕위 계승원칙 확립 및 행정 관료체제 정비
 - 말레이 반도와 벵갈만까지 통치지역 확대

- 1511년 포르투갈과 무역 개시(총포수입) 및 말라카 정복
 - 1516년 포르투갈과 통상조약 체결
 - 1592년 화란과 통상조약 체결

- 버마의 융성과 Ayutthaya의 쇠퇴
 - 13세기말 버마족의 Pagan왕국 붕괴후 16세기초 새로운 버마왕조 성립
 - . 16세기중엽 Ching Mai 및 Laos 복속
 - 1569년 3년간의 전쟁 끝에 버마군이 Ayutthaya를 정복, Dhammaraja (1569-1590)를 왕으로 한 속국 수립
 - Dhammarajaw왕의 뒤를 이은 Naresuan왕(1590-1605)은 1600년까지 버마군을 완전히 축출, 독립을 쟁취하고 Ayutthaya 왕국 재건
- 서양과의 접촉
 - Narai왕 재위기간(1657-88)에 서양과의 접촉 활발
 - . 일본, 화란, 영국 상인에게 무역 허용
 - 화란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관계 유지
 - .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 허용
 - Narai왕 사후 보수귀족 및 불교도에 의한 프랑스 선교사 처형 및 외국인 추방, 폐쇄체제 유지
- Ayutthaya 왕조의 멸망
 - Ayutthaya 왕조의 내부혼란을 틈타 버마군이 1765년 침공, 1767년 멸망
 - Ayutthaya 왕조 멸망 후 타이는 상당기간 정치적 분열 및 혼란기

4) Thon Buri시대(1767-82)

- 지방장관이었던 Phraya Taksin장군은 ChaoPhraya강 하구 서안 ThonBuri에 도읍하고 버마군에 대항
 - 1768년말까지 Ayutthaya의 과거 영토 회복
- 1776년까지 Taksin 장군은 타이왕국을 재통일하고 Chiang Mai를 정복하는 등 타이제국의 기반을 닦았으나, 말년에 정신착란증을 보여 부하들의 반란으로 타도, 처형당함.
 - Taksin의 부하 장수인 Chakri를 왕으로 추대

5) Chakri시대(1782-현재)

○ Rama 1세(Chakri, 1782-1809)

- 타이족의 부와 중국계 모 사이에서 출생
- 방콕에 도읍하고 관제 및 지방조직 정비
- 캄보디아의 Battambang 지역을 병합하고 1785년의 버마 침공 격퇴

○ Rama 2세(Phatthaloetla Naphalai, 1809-24)

- 정부조직의 제도화(왕실의 참여강화)
- 1822년 영국의 우호통상조약 체결 제의를 거절

○ Rama 3세(Nang Klao, 1824-51)

- Rama 2세의 서장자 (Rama 2세는 나이 어린 적자 Mongkut를 보호하기 위해 Nang Klao에 왕위를 승계)
- 1824년 영·버마 전쟁 발발, 1826년 버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태국과 통상조약 체결(Burney조약)

○ Rama 4세(Mongkut, 1851-68)

- Nang Klao 재위기간(27년) 수도원에서 불교경전과 서양문물을 연구하며 생활
- 1855년 영국과 우호통상조약체결(Bowring조약), 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
 - ※ 1856년 동 조약 비준시 최초로 'Siam'이란 국호 사용
- 1856년 미국·프랑스와 우호통상조약 체결
- 덴마크(1858),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1862), 오스트리아, 헝가리(1869) 등과 우호통상조약 체결
- 국내 정치·경제 개혁 추진
 - ※ 영화 "왕과 나"(영국인 가정교사 Anna Leonowens의 회고록)의 주인공으로 39명의 부인과 82명의 자녀를 둠.

○ Rama 5세(Chulalongkorn, 1868-1910)

- 근대지향의 개혁정책 추진, 인재등용(학교 설립)
- 1885년 부왕제를 폐지하고 황태자제를 도입

- 1887년 12개부로 구성되는 새로운 내각제도 도입, 영·불에 상주 공사 파견(1882)
- 1893년 프랑스의 무력에 굴복, 메콩강 좌안을 프랑스에 양도하는 조약 체결
- 1896년 영·불 공동선언으로 태국(Siam)의 중립지대화(Buffer Zone) 합의
- 1902년 국민개병제 및 1905년 현금 인두세제 도입
- 1907년 프랑스의 재침입으로 캄보디아 지역을 상실하고 1909년에는 말레이 북부 4개주를 영국에 양도
- 불교 개혁, 사원의 교육기능강화, 초등교육의 의무화 시도 등 개혁정치 실시
 - ※ 77명의 자녀를 뒀.

○ Rama 6세(Vajiravudh, 1910-25)

- 10년간 영국 유학후 귀국하여 즉위
- 타이 민족주의 대두(Anti-Chinese 운동으로 귀결)
- 왕의 세력 기반으로 군 조직 개편(Wild Tiger Corps 결성)
 - ‘Nation-Religion-King’ 이념 확립
- 제1차 세계대전시 연합군으로 참전(1917.4),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연맹의 창설회원국이 되는 등 국제위상 제고 및 불평등 조약 타파 계기 마련(1925년 영사재판권 및 관세자주권 회복)
- 1916년 Chulalongkorn대학 설립, 국기 제정, 여성지위 향상, 국가 공휴일 제도 도입등 근대화 개혁 지속 추진(1913년 성씨제도 도입)

○ Rama 7세(Prajadhipok, 1925-35)

- Rama 6세의 동생으로 태국 최후의 절대군주
- 정부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State) 설치, 재정난 등 내정문제 해결 노력
- 1930년대 초의 세계 공황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국왕이 임명하는 총리에 정부운영권을 위임하는 정부개혁안 발표
- 1932.6. 청년장교,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쿠데타 발생, 입헌군주제 도입
- 1935.3. 신병치료차 영국 체류중 공식 퇴위선언

○ Rama 8세(Ananda Mahidol, 1935-46)

- Rama 7세의 조카로 스위스로 유학중 10세에 즉위
- 1945.12. 귀국하였으나 46.6. 궁중에서 피살되고 동생인 Bhumibol

Adulyadej가 Rama 9세로 추대됨.

- Rama 9세(Bhumibol Adulyadej, 1946-현재)
 - 형인 Rama 8세의 의문의 죽음으로 19세에 즉위, 즉위 후에도 스위스에서 학업 계속
 - 1946년 라마 9세 국왕으로 즉위, 50.5. 대관식 거행
 - 2006년 즉위 60주년 (태국 역사상 가장 장수하는 국왕)
 - 태국 정부와 국민의 구심적 역할 수행
 - 1967년 이래 외국 방문을 중단하고 농촌복지사업 등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에 전념, 국민적 존경과 사랑 향유

6) 제 2차 세계대전과 태국

- 1941.12. 상륙한 일본군이 대 영국 전쟁을 위한 일본군의 무상주둔과 통행을 요구하자 Pibul 총리가 이를 수락
 - Pibul은 민족주의자로 일본 세력을 업고 태국의 세력권을 확장코자 하는 "대 태국주의"를 추구
- 1942년 태국 주권·독립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일본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고, 대 영·미 선전포고
 - Seni 주미 태국 대사, 대미 선전포고문 전달을 거부하고 미 정부의 지원 하에 항일 'Free Thai Movement' 결성
- 1943년 이후 전황이 일본에게 불리해 짐에 따라 Pibul 총리의 암묵적인 양해하에 미국내의 태국인들이 '자유 태국 임시정부'를 수립함. (미군과 합동으로 태국내에서 반일 활동)
 - 1944.8. 일본과의 전시협정 파기
- 1945.8. 대영·미 선전포고는 일본의 무력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선언 하고, 태국내의 친일파를 제거, '자유태국 임시정부'를 수립
- 영국과 불란서는 태국을 불신하는 입장이었으나 태국이 영·불 양국에 자진 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특히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패전국 대우를 면하

고 1946.12. 유엔에 가입

-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 연합국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유엔결의에 따라 한국전에 즉시 파병

다. 정치

1) 정 체 : 입헌군주제

가) 1932.12.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헌법 채택

- 1932.6. 청년장교 및 관료들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쿠데타 발생, 입헌군주제 도입

나) 현 헌법은 2007.8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제17차 개정헌법)

- 2006.9월 군부쿠데타 이후 과도정부가 설치한 헌법기초의회(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의 개정안에 대해, 2007.8.19 국민투표를 실시, 60%의 지지로 통과
- 특히 총리의 연임제한, 부정부패 방지, 총리 탄핵제도 등 총리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 다수 포함

2) 국가 원수 : 국왕

가) 기 능

-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하여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사
-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 내각 및 18명 이내의 추밀원(Privy Council)위원, 각급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권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 등 임명

나) 현 국왕 :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푸미폰 국왕)

- 현 Chakri 왕조 제 9대 왕(라마 9세)
- 1946.6. 형인 라마 8세 Ananda 국왕의 변사로 왕위 계승
- 1950.5. 대관식 거행
 - ※ 왕 비 : Her Majesty Queen Sirikit
 - 왕세자 : His Royal Highness Crown Prince Maha Vajiralongkorn
 - 공 주 : Her Royal Highness Crown Princess Maha Chakri Sinindhorn
- 1988.7. 태국 사상 최장기 재위 국왕이 됨.

3) 행정부

가) 형태 : 내각책임제

나) 내각

- 구성 : 2007 헌법 규정 에 따라 총리 1명과 35명 이하의 각료로 구성(국왕이 임명)
- '08.12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6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내각 출범

다) 총리

- 임기 4년
- 헌법상 국왕이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부서하며, 하원의원만이 총리에 임명될 수 있음.
 - 단, 총리 임명 후에는 의원직 사퇴
- 헌법상 규정상 총선 후 하원 첫 소집 후 30일 이내에 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총리 지명자를 국회의장이 국왕에게 임명제청
- 헌법상 국회는 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 표결권은 없으며, 다만 임명후 불신임 표결만 가능
- 현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제27대) 내각은 2008.12월 공식 출범

라) 연정구성 정당별 각료직 배분(총리 포함 34, 2009.3월 현재)

- 민주당(Democratic Party) : 18석 (총리 포함)
- Bhum Jai Thai Party : 6석
- Puea Pandin Party : 4석
- Chart Thai Pattana Party : 3석
- Ruam Jai Thai Chart Pattana Party : 2석
- Social Action Party : 1석

마) 지방행정

- 구성 : 1개 특별시(방콕), 76개 주(Changwat), 1개 직할시(파타야), 795개 군(Amper), 7,255개 면(Tambon)
-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 관리는 민선(임기 4년)
- 현 방콕시장 : Sukhumbhan Paribatra (민주당, 2009.1.16 취임)

4) 국 회

가. 상 원(Senate)

(1) 구성 및 선출

- 헌법에 따라 150명으로 구성
 - 보통선거에 의해 직선(과거에는 국왕이 임명)
 -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각료직 겸직도 불가
 - 2000.3.4 최초의 직접선거, 2008.3.2 선거 실시
 - 임명직 74명, 선출직 76명(각 도별 1명 선출)

○ 피선거권

- 연령 및 학력 : 40세, 학사 이상

(2) 임 기 : 6년(선출직), 3년(임명직)

(3) 의장단

-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 : Prasobsook Boondech
 - ※ 상원의장은 국회 부의장
(Vice-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겸임
- 상원부의장
 - 제 1부의장 : Nikom Wairatpanij
 - 제 2부의장 : Tassana Boontong

(4) 주요 권한

- 하원발의 법률안 및 상정안 심의
- 각종 감찰기구 위원 임명권
- 각료·정무직 공무원, 헌법 재판소장, 행정 재판소장, 검찰총장, 하원의원의 비행조사 요구권

나) 하 원(House of Representatives)

(1) 구성 및 선출

- 헌법에 따라 480명의 의원으로 구성
 - 400명은 대선거구제에 의거 보통선거로 직선
 - 80명은 8개 비례대표 지역구별 후보명단에서 선출
 - 2007.12.23 하원의원 선거 실시
- 하원의원 선거는 임기종료의 경우 임기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의회 해산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동 기간 중 임기종료의 경우 상원이 국회를 대표
- 피선거권 : 25세 이상(승려 제외)

(2) 임 기 : 4년

(3) 의장단

○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Chai Chidchob
(Bhum Jai Thai 당)

※ 하원의장은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겸임

○ 하원부의장

- 제 1부의장 : Samart Kaewmeechai (Puea Thai 당)

- 제 2부의장 : Apiwan Wiriyachai (Puea Thai 당)

(4) 주요 권한

○ 대정부 불신임권

○ 주요 법률안 발의

○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5) 정당별 의석 분포

정 당	지역구	전국구	계
Puea Thai	150	27	187
Democrat	140	33	173
Bhum Jai Thai	28	4	32
Puea Pandin	25	7	32
Chart Thai Pattana	24	1	25
Ruam Jai Thai Chart Pattana	8	1	9
Prachraj	8	1	9
Social Action	4	1	5
People Party	2	1	3
총 계	399	76	475

(2009.3월 현재)

6) 사 법

가) 연 혁

- 1907년 근대 사법제도 확립
- 1932년 사법권 독립이 헌법상 보장

나) 3심 제 도

- 제 1심
 - 중앙(14개소) : 민사재판소, 형사재판소, 간이재판소, 중앙소년재판소, 노동재판소, 조세재판소
 - 지방(119개소) :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지방소년재판소
- 제 2심(4개소)
 - 중앙 항소 재판소 : 방콕 및 중부지역 관할
 - 제 1지방 항소재판소 : 동북지역 관할
 - 제 2지방 항소재판소 : 북부지역 관할
 - 제 3지방 항소재판소 : 남부지역 관할
- 최종심(1개소) : 최고재판소

다) 헌법재판소

- 구 성 : 소장 및 14명 판사로 구성되며 상원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임 기 : 9년(재임 금지)
- 주요 권한
 - 각종 조직관련 법령의 합헌성 여부 판정
 - 상.하의원, 각료, 선거위원회 위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제출하는 재산등록의 적합성 여부 판단
 - 헌법 기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쟁의 판정, 정당의 해산 판결 등

7) 최근 국내 정치정세

- 2005.2월 실시된 총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탁신 전 총리와 집권 TRT (태국애국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의료,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
- 2006.1월 발생한 탁신 전총리 일가 소유 Shin Cooperation 주식의 대규모 (약 19억 달러 상당) 해외 매각을 둘러싼 고의적인 세금 회피 사건으로 국민민주연대(PAD) 등 반대파의 비판이 거세지자 탁신 전총리는 1년만에 하원을 해산시키고 재총선을 통한 신뢰 회복을 도모
-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2006.4월 실시된 하원 총선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 탁신 전총리와 TRT의 부도덕성 및 총선 과정상의 불법성을 집중 공격, 헌법재판소로부터 총선 무효 결정을 유도
- 탁신 전총리와 TRT는 11월 재총선을 약속하였으나, 반대파는 계속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탁신 전총리의 하야를 촉구
- 탁신 전총리가 반대파의 하야 압력에 정면대응하면서 11월 재총선 강행 방침을 고수하던 상황에서, 손티 육군사령관이 중심이 된 군부는 2006.9월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정부를 전복시키고 수라웃 출라는 추밀위원(군 출신)을 과도정부 총리로 추대
 - 푸미폰 국왕은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신속히 추인
- 과도정부는 쿠데타후 약 15개월간 집권하면서 국가안정과 단합,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쿠데타 세력내 강경/온건파간 이견, 사회적 양극화 지속 등으로 결과적으로 민심을 얻는데 실패
 - 쿠데타후 전국 76개 주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그간의 조치를 통해 2007년말 까지 31개 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계엄령의 존속은 국가적 단합과 태국의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
 - 특히 과도정부는 남부 3개 주(얄라, 나라티왓, 파타니)의 이슬람 분리주의 폭력사태의 종식을 국가안보상 최대 과제로 추진하였으나, 정부군 및 경찰은 물론 민간인 대상의 폭력테러 지속

- '07.5.30 태국 헌법재판소, 구 여당 TRT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체하고 선거부정에 연루된 탁신 전총리 등 111명의 당 간부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키로 결정
 - '07.8.19 과도정부의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결과 57.6%의 낮은 지지율로 통과
- 2007.12.23 전국적으로 실시된 총선(하원의원 선거)을 통해 친탁신계 민권당 (PPP: People Power Party)이 전체 480석 중 233석을 차지, 쿠데타 이전 집권 세력이 다수의석을 점유
 - 다만, 선거 결과 북부 및 중동부 지역, 농민 및 노동자층이 민권당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인 반면, 방콕 및 남부지역, 중산층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열현상을 보임.
 - 2008.1월 국회가 개원되어 사막 총리 및 용웃 국회의장을 선출
 - 2008.2월 사막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민권당 및 5개 정당의 연립정부 출범
 - 2008.5월 민권당 소속 의원들은 2006년 쿠데타로 폐지된 1997년 헌법내용을 복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국민민주연대(PAD) 등 개헌 반대 세력은 대규모 개헌반대 집회 개최
 - 국민민주연대가 정부청사를 점검하고 반정부시위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2008.8월 탁신 전총리가 영국으로 도피(망명신청)하였으며, 9월 사막총리가 하야하고, 후임으로 솜차이 총리(민권당)를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 출범
 - 2008.10월초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동맹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 총리 사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었으며 국민민주연대는 급기야 11.25-12.3간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점거, 이 사태의 여파로 12.15부터 치앙마이에서 개최 예정된 ASEAN/ASEAN+3/EAS 정상회의가 연기
 - 2008.12.3 헌법재판소는 2007.12월 총선시 당 간부의 선거부정을 이유로 민권당 등 3개 집권당의 해산을 명령, 솜차이 총리가 궐위되고 친탁신 정권이 붕괴

- 민권당은 푸에타이당(Puea Thai)으로 당명을 바꾸고 파라차랏당과 함께 야당을 구성
- 2008.12월 아피싯 당수가 이끄는 민주당(원내 제2당)은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 찻타이당, 네윈그룹 등 집권당내 이반 세력과 군소정당들을 설득해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연정을 구성, 집권에 성공
 - 08.12.17 제27대 총리로 취임한 아피싯 총리는 국민단합, 경제위기 극복, 태국의 국가이미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추진중
- 태국 정부, 2009.2.28-3.1간 후아헌에서 제14차 ASEAN 정상회의 개최
- 야당 태국인을 위한 당(Puea Thai, 민권당 후신) 및 친탁신세력(소위 red shirt)은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 지속 전개

라. 사회 문화

1) 민족성 및 사회관습

가) 국왕에 대한 높은 존경심

-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에 초연하나 모든 국민이 국왕을 존경

나)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

- 오랜 세월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애착이 특징

다) 불교에 의한 가치관

- 불교의 자비심 및 관용성이 일상생활에 반영

라) 주요관습

- 두손을 이마에 올려 사례하는 태국식 인사(“와이”)의식은 태국의 국교화된 불교의식에서 도입하여 생활화된 것
- 결혼을 위하여 신랑측은 신부측 부모에게 ‘Sin Sod’라고 하는 일정금액의 지참금 지불습관이 아직도 전래
- 물건을 수수할때 왼손 사용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머리를 중히 여겨 어린이라도 머리를 쓰다듬지 않음.
- 불교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성씨제도가 없었으며, 1913년 처음 성씨 제도 도입
 - 현재도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을 부름
 - 아피싯 웨차치와 (Abhisit Vejjajiva) 총리의 경우 아피싯 총리로 호칭

2) 종 교

가) 종교별 인구

- 불 교 : 5,900만명(94.6%)
- 이슬람교 : 237만명(4.6%)
- 기독교(천주교 포함) : 43만명(0.7%)
- 기 타 : Hindus, Sikhs, Brahmin

나) 종교정책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나 실제적으로는 불교이외 종교의 교세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선교사수 제한 등).

다) 태국 불교의 특징

- 태국불교는 소승불교로서 매우 엄격
 - 대처승이 없고, 정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
- 남자는 일생에 한번 승적을 보유(원칙적으로는 최소 3개월)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
- 태국은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로 불교가 국교화 되어 있음.
- 불상은 신성한 존재이며 불상 모독은 금물임. 따라서 불상과 승려가 신성한 존재로서 경의와 숭앙을 받음.
- 태국국민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불교 신앙에서 유래

3) 언 론

가) 언론보도 정책

- 대부분의 지상파 TV는 정부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며, 라디오도 정부에서 직·간접 통제하고 있으나, 신문·잡지 등 기타 언론매체의 운영은 비교적 자유로움.
 - 軍 자체 지상파 TV社 운영(CH 5 TV)
- 총리실내 공보실에서 공보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국내언론 등록을, 외교부에서 상주외신 등록 및 국제업무를 분담

나) 공보·언론 행정체제

- 공보행정 : 총리실 공보실장
 - Public Relations Department(PRD)
 - Mass Communications Organization of Thailand(MCOT)
- 내무부(국내 언론 등록) 및 외교부(상주외신 등록, 국제업무)

다) 주요 신문

- 08년말 현재 중앙일간지 16종(태국어 13종, 영어 3종), 지방일간지 8종을 포함 총 24종의 일간지 발간
- 주간지, 격주간지, 월간지는 전국적으로 약 50여종 발간

(태국어지)

- Matichon (약 40만부, 지식인 구독, 최고권위지)
- Kom Chad Leuk(약 50만부, 대중지)
- Khao Sod (약50만, 대중지)
- Thai Rath (대중지 · 약 100만부, 중산층 이하에서 구독)
- Daily News (대중지 · 약 80만부, 중산층 이하에서 구독)
- 기타 Naew Na, Manager Daily, Krungthep Turakij, Post Today, Siam Rath, Siam Sports, Boxing Daily, Star Soccer

(영자지)

- Bangkok Post(중립, 약 7.5만부)
- The Nation(중립 · 민족주의 성향, 약 6만부)
- Business Day(중립 · 경제지, 약 3만부)

(중국어지)

- Sing Sian Yit Pao(성산일보, 보수, 5만)등 4개지
※ 70년대초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화교학교를 폐교시킨 이래 중국어 신문의 발행부수도 감소

(일본어지)

- 요미우리신문 위성판, 방콕 주보 등 5개 매체

라) 통신사

- Thai National News Agency(TNA)
 - MCOT가 운영하는 국영통신이나, 각 언론사의 활용도는 매우 낮음.

마) 방송 및 TV

- 방송 : PRD산하 국영 Radio Thailand(전국 네트워크)외에 전국에 523개 방송국 및 지국(AM, FM)
- 지상파 TV : Channel 3, 5, 7, 9, 11 및 NBT 등 주요 6개사
- CATV : 100여개의 SO가 영업중이나, UBC-TRUE가 전체 시장 55% 점유
- UBC-TRUE : 가입 세대수 약 55만, 47개 채널, 5개 패키지로 운영

4) 문 화

가) 태국 문화의 특징

- 태국문화의 기조는 인도·버마·크메르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불교문화는 스리랑카로부터 도입
- 태국 종족은 11세기경 중국 서남단에서 현재의 태국땅으로 이주해왔다는 것이 일반정설이나, 말레이 반도에서 북상을 했다는 설과 선사시대이후 주변종족들이 계속 이주해 들어와 구성되었다는 설들이 대립
- 태국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사회 생활문화의 저변 형성. 태국의 각종 건축·사원·미술·무용 등은 불교문화에서 비롯
- 불력 사용(서기 + 543)
* AD 2009 = B.E 2552

나) 문화정책 기조

- 문화유산 보존, 예술창작 및 진흥,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다) 타이어

- 공용어는 Sino-Tibet어계에 속하는 타이어
- 1286년 수코타이 시대의 람캄행대왕이 고대 크메르 문자를 모방 제정

- 44개의 기본자음과 32개의 기본모음 및 4개의 성조 부호가 있으며, 10자의 타이 고유 숫자가 있음.

라) 문화 및 관광·스포츠 업무 등 관장 행정관청

-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
 - 장관은 부총리 겸직, 문화정책 기본방향 수립, 국제문화교류, 출판 등, 산하에 국가문화위원회(NCC) 존치
- 관광·스포츠부(The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
 - 관광 및 스포츠 관련 제 업무, 산하에 관광청(TAT) 존치

마) 방콕소재 주요 문화관계 국제기구

- UNESCO 아·태지역 본부
- SEAMEO(동남아 교육장관기구)

5) 교 육

가) 학 제

- 태국은 6-3-3-4년제의 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 초등교육(6년, 의무교육)
 - 취학 연령 아동의 약 94% 입학
-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 중학 : 연령인구의 약 40% 진학, 고교 : 연령인구의 약 26% 진학
- 대학교육(4년)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서 대학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학생부담은 극히 미미(사립대학 제외)
 - 출라롱콘대, 탐마삿대 등 국립대 16개교, 방콕대학 등 사립대학 25개교, 시나카린대 등 사범대 36개교

나) 교육행정

- 교육부 :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 고등교육위원회 : 대학 교육 관장

다) 국제학교

- 방콕 등 태국내 주요 도시에 영미계 등 80여 개의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
- 한국계 국제학교로는 방콕한국국제학교(KISB)가 2001년에 개교

6) 사회보장제도

가) 보건분야 현황

- 경제발전예 따라 보건시설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병원과 의료진의 수가 증가하여 사산율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
 - ※ 1000명중 사산율이 1950-55년간 15.6명에서 2000-05년간 8.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중 평균수명은 50.8세에서 68.6세로 연장
- 태국은 에이즈 확산 국가로 오명이 높았으나, 적극적인 에이즈 퇴치정책으로 2007년 에이즈 확산률을 1.4%로 감소하는데 성공
 - 특히 임신부의 HIV 확산률이 1995년 2.35%→2003년 1.18%로 감소

나) 사회보장제도

- 의료 및 건강 보험제도 실시
 - 매월 보험료 지불, 보험카드 소지자에 대한 무료진단 및 치료
- 무료 주택 제공
 - 불구자·고아·무의탁 노인 또는 여자에 대한 주택 무료제공
- 노동법에 의한 최저 임금제 실시

마. 경제

1) 일반 경제정세

- 태국은 수출지향 경제의 (GDP의 70%) 중진개도국
 -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2번째 경제 규모
- 1970년대-96까지 수출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 미국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평균 9%의 빠른 경제성장 달성(Tiger Economy)
 - 경제기반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편, 수출산업화, SOC확충,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 80년대 후반에는 10%내외의 고도성장을 시현했으며 90년대 중반까지는 8%내외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
-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와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노동집약적 상품이 임금 상승과 중국등 신흥 저임국가들의 대두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14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 특히 금융기관 등이 그간 무분별하게 차입한 외자가 부동산개발, 주식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대
 -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 ①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무역수지적자의 확대
 - ② 금융시장 개방과정에서의 과도한 외자유입
 - ③ 부동산, 주식 시장 과열에 따른 거품경제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이에 따른 태국경제의 대외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단기 해외자금의 급속한 유출로 발생
- 태국정부는 외환방어를 위하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97.7)하고 IMF등으로부터 172억불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는 한편(97.8), 경제 및 금융부문 개

혁 추진

- 56개 Finance사의 폐쇄 등으로 1.3조바트 금융발전기금(FIDF) 투입
- 국내 상업은행을 12개로 통폐합하고, 부실채권(NPLs)을 정리
- 가족형태의 기업경영을 지양하고, 회계 및 경영투명성 제고
- 공공부문 개혁으로 경제정책결정 및 대응능력 향상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태국경제는 9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여러 가지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 2003년 SARS, 2004년 쓰나미, 2004년부터의 고유가, 2006년 군부 쿠데타

○ 2007년도 4.9%의 경제성장률을 구현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국제금융위기 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국내 정국불안 등에 따른 수출증가율 감소와 관광 객급감으로 2.6% 성장에 그칠 전망

주요 경제 지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10.5	4.4	4.8	2.2	5.3	7.1	6.3	4.5	5.0	4.8	2.6
1인당GDP(불)	1,830	1,985	1,972	1,844	2,009	2,241	2,513	2,724	3,165	3,730	4,073
물가상승률(%)	8.1	0.3	1.6	1.6	0.7	1.8	2.7	4.5	4.7	2.3	5.5
실업률(%)	4.4	4.2	3.6	3.3	2.4	2.2	2.1	1.8	1.5	1.4	1.4
수출(억불)	529	568	679	631	661	781	949	1,092	1,297	1,525	1,778
수입(억불)	406	475	624	606	634	743	935	1,177	1,288	1,400	1,787
경상수지(억불)	143	125	93	51	47	48	28	△76	9	125	△8
외환보유액(억불)	295	348	327	330	389	421	498	521	670	875	1,110
총외채(억불)	1,051	950	797	675	595	518	513	520	596	617	-

* 자료 : NESDB, BOT, 태국 상무부

2) 부문별 경제현황

가) 산업구조

- 태국의 GDP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온 반면, 제조업·서비스업의 비중은 확대
 - 태국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림수산업의 대 GDP 비중이 50년대에 47%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23.2%, 1990년도에는 12.5%, 그리고 2007년도에는 8.7%로 축소
 - 제조업은 태국경제의 근대화 및 일본, 미국, 대만 등의 태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
 - 1980년도에는 제조업의 대 GDP비중이 농업보다 낮은 21.5%였으나,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을 계기로 일본의 제조업 생산시설의 태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어 1990년도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27.2%로 확대되었고, 2007년에는 39.6%까지 확대
 - 한편, 관광 등 서비스·유통업도 꾸준하게 성장하여 2001년에는 GDP 비중이 30.7%에 이르렀으며 2007년도에는 49.5%를 기록

< 태국의 산업구조 (2007), 단위: % >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49.5)					
			건설업	도소매	교통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8.7	2.2	39.6	2.3	13.9	10.1	3.5	3.9	15.8

- 태국은 자동차, 식품, 패션 등 14개 전략산업을 통해 아세안의 Hub 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숙련공 부족과 기술개발 등 혁신능력 한계로 애로
 - * 14개 전략산업: 서비스, 전자전기, 식품, 섬유, 물류창고, 가구, 자동차, 요업, 신발·가죽, 고무, 사출산업(플라스틱), 철강, 보석·장식, 석유화학

나) 물가

- 농산물 가격 상승과 바트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외환위기사 높이가 상승했던 물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 미만의 상승에 그쳐 매우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음.
- 04년부터 농산물가격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나타내어 2005년에는 전년대비 4.5%, 2006년에는 전년대비 4.7%까지 상승

-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바트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과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에 따라 2007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회복
-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통화가치 하락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다) 고용(실업률)

- 외환위기시 긴축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라 4%대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은 2000년이후 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08년말 이후 경기침체로 다시 증가 추세
 - 2005년부터는 실업률이 2% 이하로 낮아졌으며, 2008년 실업률은 2007년과 동일한 1.4%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의 실업률 수준 회복
- 2008년말 현재 전체인구 6,300만명중 경제활동인구는 3,770만명
 - 이중 취업자는 약 3,700만명이며 실업자는 52만명
 - 1,470백만명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2,230만명이 제조업 등에 종사
 - 부문별 고용비중은 농수산업 39.7%, 제조업 15.5%, 유통 15.4%, 건설 5.9%, 호텔/식당 6.5%, 교통/물류 2.9%, 교육 2.9%, 공무원/군인 3.5%, 기타 7.5%

라) 외채 및 외환보유액

- 외환위기 직전 1천억불을 상회하던 외채규모는 계속되는 무역·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시현
 - 2004년에는 513억불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7년말에는 617억불을 기록
 - 이에 따라 외채의 대 GDP비중도 1997년말 93.2%에서 2007년말 25.1%로

하락함으로써 “외채에 문제가 없는 국가”수준으로 감소

- 외환보유액은 2008년말 현재 1,11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말 387억불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마) 금융시장 동향

- (주가) 외환위기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는 2002년 이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었음.
 - 2003년도 700p대를 회복한 이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주가는 2007년말 800p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나타냈음.
 - 그러나, 2008년중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
 - * 주가 : (97말)372.69 → (00말)269.19 → (06말)679.84 → (07말)858.10 → (08말)449.96
- (환율) 97년 외환위기사 외환평형기금에 의한 고정환율제(96년말 1달러당 25.55바트)를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2001년까지 바트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
 - 이후, 태국경제의 회복 등에 따라 2002년 이후 2005년말까지 환율은 40 바트/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
 - 2006년 이후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태국의 무역·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지속적인 강세 기조를 유지하던 바트화는 2008년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경상수지 적자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음.
 - * 환율추이(연평균) : (96)25.32 → (01)44.43 → (03)41.48 → (06)37.93 → (07)34.56 → (08)35.04 → (09.3말)36.03
- (기준금리)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정책 및 유동성 공급확대로 2%내외에서 유지되었던 금리는 2004년 들어 물가상승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 조정되어 2006년에는 5%까지 상승
 - 그러나, 2006년 하반기 이후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8년말 2.75%까지 하락

- 특히,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09년중 2회에 걸쳐 1.25%를 인하하여 09.3월 현재 1.5%의 낮은 수준을 유지

3) 교역

가) 수출동향

- 태국은 2008년중 총 무역규모 3,565억불 (2007년도 대비 21.3% 증가)을 달성 하였으나, 2008년말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
 - 2008년중 수출 15.6%(1,778억불), 수입 27.6%(1,787억불) 각각 증가
 - 무역수지는 8억불 적자로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

태국의 수출입 동향(2006-2008년)

(단위: 억불)

	2006년	2007년	2008년	증감('08/'07)
수출	1,297	1,525	1,778	16%
수입	1,288	1400	1,787	28%
무역수지	9	125	△8	-
교역규모	2,585	2,904	3,565	21%

* 자료: 태국 상무부

- 수출구조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80% 가량을 공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10%, 농공산품 6%, 광물·원료는 약 5% 정도임.
- 주종품목 (2008년도 기준, () 안은 수출품목별 순위)
 - 농산물 및 연료 : 연료(4위), 고무 (5위), 쌀 (6위), 수산물 (12위)
 - 공산물 : 컴퓨터(1위), 자동차(2위), 보석(3위), 폴리머(7위), 철강금속 (8위) 등
- 주요 수출대상국 (2008년)
 - 미국(203억불), 일본(201억불), 중국 (162억불) 순
 - 한국은 태국의 12번째 수출국가로 매년 증가세 시현

나) 수입동향

- 80년대 이후 산업화와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자본재, 산업용 원·부자재, 건축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다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바트화의 급격한 절하로 수출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증가, 수입증가율 하락으로 무역흑자로 전환
- 수입구조로는 전체 수입의 약 70% 가량이 자본재, 원재료 및 중간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재 비중은 8.4% (2008년도)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1위), 기계 및 부품, 철강금속, 화학제품, 전기기계 등으로 구성
- 주요 수입대상국 (2008년)
 - 일본(334억불), 중국(201억불), 미국 (114억불), UAE(111억불) 순
 - 한국은 태국의 8번째 수입국가로 매년 증가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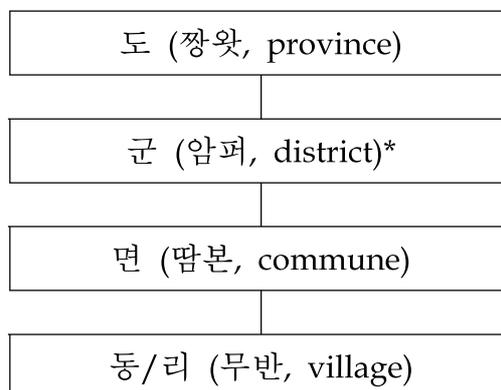
다) 외국인 투자

- 2008년 외국인 투자 신청액은 13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하였으며, 투자 승인액도 105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바. 지방제도

1) 개요

- 지방행정체제



*인구가 많은 군은 다시 몇 개의 subdistrict로 세분

○ 지자체 종류

- 시자치단체(Municipality)
- 도자치단체(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면자치단체(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방콕도
- 팟타야특별시
 - ※ 도시지역에는 시자치단체(텃싸반, Municipality)
 - ※ 인구의 70%이상 거주하는 농촌지역에는 면자치단체

○ 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 뿐이며 자치단체가 아님

- ※ 한국의 1961년 당시 읍면자치제와 비슷한 형태

○ 도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군과 subdistrict를 관할

- (한국의 광역-기초간 계층제와 성격이 다름)

2) 지방자치단체 종류

○ 시자치단체 (텃싸반, Municipality)

- 도시성격을 띤 지역의 자치단체
- 종류 : 텃싸반 나컨(시에 해당), 텃싸반 므엥(읍에 해당), 텃싸반 땀본(면에 해당)
 - ※ 시자치단체 수는, 텃싸반 나컨(23개), 텃싸반 므엥(142개), 텃싸반 땀본(1,841개)
- 나컨이나 므엥은 지방분권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더 큰 자치권을 부여 → 태국 지방자치의 핵심

- * 의회-집행부 형태, 1999년부터 집행부 장(Executive)이 시장이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

- 도자치단체 (옹간버리한쑤언짱왓, 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태국은 75개 도(짱왓)로 구성 (*방콕까지 합쳐 전체 76개 도)
 - 도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군과 군지부를 관할
 - * 의회-집행부 형태, 집행부 장(Chief Executive)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나,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도지사(governor)가 있으며, 실제 권한 및 위상에 있어 도지사가 더 우월한 실정

- 면자치단체 (옹간버리한쑤언땀본, 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 가장 작은 자치단체이자,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자치단체
 - 면자치단체 수는 6,145개
 - 지방행정의 근간, 농촌지역의 자치능력을 고려한 준자치적 성격
 - * 의회-집행부 형태, 집행부 장(Chief Executive)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

- 방콕도 (끄룽텝마하나콘, Bangkok)
 - * 의회-시장(governor) 형태
 - 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
 - 50개 구, 모든 구에는 구의회-구청장 (의원만 선거직)

- 팟타야 특별시 (므엥팟타야)
 - * 미국식 의회-시정지배인(council-manager form) 제도를 도입하여 독특한 자치

사. 교민현황

- 1) 전체교민수 : 2008. 11월 현재 약 25,000명으로 추정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 약 120명

- 주로 원로교포 및 자영업 종사자 일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주권을 소지하더라도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지 않은 교민들이 대부분임. 이들은 대개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얻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일반체류자 : 약 23,800명

- 상당수 교민들은 관광관련업종(여행사, 식당, 골프, 보석 등 선물가게, 한약방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므로 주변국을 왕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음

○ 유 학생 : 약 1,000명

- *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관광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교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2) 지역별 교민수

○ 방콕 및 파타야 지역 : 약 22,000명

○ 푸켓지역 : 약 1,500명

- 대부분 관광관련업에 종사

○ 치앙마이 지역 : 약 1,000명

- 선교사, 관광업 종사자, 퇴직후 장기 체류자,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교민사회 형성과정

- 제 1세대는 교민사회 원로들로서 2차 세계대전중 일본군 또는 군속으로 징용되어 태국 혹은 동남아 지역에 진출·정착하였거나, 일제시대 중국 등에서 거주하다 종전후 태국에 이주한 사람들임.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제조업에 종사하여 대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생존자는 몇 명되지 않음.

- 제 2세대는 월남전 종전 후 태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교민들과 중동건설 붐과 함께 태국 인력 송출 등을 하면서 정착한 인사들로서 주로 무역 · 여행업, 요식 업에 종사하며 교민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음.
- 제 3세대는 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해외여행 개방에 따라 태국에 대한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산업관련 진출한 교민들과 한국 투자 진출 증가 등 한·태 경제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상사 지사원 및 투자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체류교민의 대다수를 차지함

4) 교민단체 현황

가) 재태국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Thailand)

- 창립 : 1968.12월 창립
- 회장 : 김도연 (제 26대, 임기: 2009.1월 ~ 2010.12월)
- 사무실 : 스쿰빗 21가 'Rajapark빌딩6층"에 위치 ○ 회보 "태국한인소식" 발간(월간)
- Tel : (662)258-0331/2 Fax : (662)661-7020

나) 한인회 지회

- 춘부리지회(파타야 포함) : 1991년 창립(회장: 정차영), 교민 약 1,000명
- Tel : (038)489-042 Fax : (038)489-043
- 치앙마이 지회 : 2001. 6월 창립 (회장: 장충식), 교민 약 1,000명
- Tel : (053)266-646 Fax : (053)260-411
- 푸켓지회 : 2001. 6월 창립 (회장 : 김태원), 교민 약 1,500명
- Tel : (076)211-490/9 Fax : (076)211-944

※ 치앙마이와 푸켓에는 명예영사를 두어 교민 보호 및 고충 해결 지원

▶ 치앙마이 명예영사

- 성명 : Wachara Tentranont
- 직업 : 부동산 개발업
- 업무개시 : 2007. 7. 20.

▶ 푸켓 명예영사

- 성명 : Tosaporn Tephabuttra
- 직업 : 민주당 국회의원, Briza Resort Group 사장
- 업무개시 : 2008. 6. 19

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지회

- 현재 제13기(임기: 2007.7.1~2009.6.30) 태국지회 위원 18명
 - 지회장 : 김장열(SeeGreen 해운(주) 대표)/ 전 한인회장

라) 기타 단체

- 직능단체 : 한태상공협의회, 지·상사협의회(현대종합상사 등 30개 업체), 기업체 협의회기업체협의회(삼성전자 등 50개 업체), 한·태관광진흥협의회(KMI 등 80개 여행사)
- 종교단체 : 방콕살롬교회, 방콕한인연합교회, 천주교한인교회, 한국한인장로교회, 파타야 한인교회 파타야 한인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등
- 교민 매거진 : 교민광장, 교민잡지

5) 교민학교

가) 방콕한국국제학교

- 2001 .3. 31 개교
- 2002. 2. 18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식인가 획득
- 2003. 9. 8 주재국 교육부로부터 인가 획득
- 2008. 1월 최진봉 교장 부임
- 2008. 11. 1일 현재 학생 수 140명, 교사 수 23명

나) 방콕한인토요학교

- 1964년 개교
- 국제학교, 태국계 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로 매주 토요일에 오전 수업을 실시중
 - ※ 정부는 매년 이들 학교에 대해 한글학교운영지원금 및 교과서를 지원하고 있음
- 지방에는 푸켓 한글학교가 있으며 종교단체에서도 소규모 한글교실 운영중
- 2008. 11. 1. 현재 총 학생 수 150명, 교사 수 13명

2. 산업재해 현황

가. 산업재해통계

- 태국은 1997년부터 금융 위기에 휩쓸렸지만, 각종의 산업 활동은 계속해 태국의 사회,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이루어 왔다. 금융 위기 이전의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산업 활동의 발전에 수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강해져, 노동 재해의 공식 통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¹⁾. 노동자 재해 보상 제도(Workmen's Compensation Scheme)에 의해서 보상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부의 자료를 보면 2003년의 재해 통계를 보면 노동 재해 건수의 증가는 노동 환경의 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도, 산업 활동의 확대와 노동자 재해 보상 제도의 대상 범위의 확대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 그러나 계속적인 재해 발생의 문제점으로는
 -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 재해로 사상하고 있어, 큰 경제적 손실의 문제점
 - 노동자 재해 보상 제도의 대상의 확대
 - 노동 재해 및 직업성 질병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이라고 분석이 불충분
 - 직업성 질병의 발견을 위해서 확실한 기반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1) 노동자 재해 보상 기금(Workmen's Compensation Fund)이 대상으로 하는 청구에 근거한 것으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금의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1993년부터 산재근로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건성(Ministry of Public Health)사회 보장국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보상 기금부).

2) 사회보장국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보상기금부의 노동자 재해 보상 제도(Workmen's Compensation Scheme)에 의해서 보상된 사례집에서 분석되고 있다.

나. 산업재해 발생현황

<표> 2003년 재해발생현황

재해의 정도						계
월	사망	영구 장애		일시적 노동 불능		
		전신적 장애	부분적 장애	휴업 4일 이상	휴업 3일 이하	
1	78	1	588	4,471	12,761	17,899
2	69	2	500	4,070	11,509	16,150
3	78	3	517	4,124	11,938	16,660
4	56	1	408	3,736	11,197	15,398
5	70	-	410	4,220	12,135	16,835
6	67	2	388	4,564	13,568	18,589
7	68	1	289	4,591	13,383	18,332
8	63	3	245	4,429	13,091	17,831
9	63	1	212	4,976	14,357	19,609
10	58	1	137	4,377	12,485	17,058
11	54	1	93	4,165	13,003	17,316
12	63	1	34	4,641	14,257	18,996
계	787	17	3,821	52,364	153,684	210,673

<표> 2001 - 2007년 재해발생현황

재해의 정도						계	근로자수	1,000명당 재해자수
년도	사망	영구 장애		일시적 노동 불능				
		전신적 장애	부분적 장애	휴업 4일 이상	휴업 3일 이하			
2001	607	20	3,510	48,077	137,407	189,621	5,544,436	34.20
2002	650	14	3,424	49,012	137,879	190,979	6,541,105	29.20
2003	787	17	3,821	52,364	153,684	210,673	7,033,907	29.95
2004	861	23	3,775	52,893	157,982	215,534	7,386,825	29.18
2005	1,444	19	3,425	53,641	155,706	214,235*	7,720,747	27.74
2006	808	21	3,413	51,901	148,114	204,257*	7,994,813	25.56
2007	741	16	3,259	50,525	144,111	198,180	8,178,180	24.29

* 지진해일 포함, 2005년 938건, 2006년 59건(출처 : 태국 산업안전보건 국가보고서)

3. 재해예방의 법적체계

가. 법률적 개요

- 태국은 그 고유법은 인도의 마누법전의 영향과 함께 발달하였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위하여 법의 근대화의 필요성에 부딪쳐 처음에는 영국법, 후에는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영향과 함께 법전편찬이 이루어졌다. 이때에 일본 법률가(政尾藤吉)가 역할을 하여 1935년에 최종적으로 성립된 민상통일법전의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민법, 상법전의 합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태국은 유교와 한자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법계의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³⁾.

나. 노동법 주요내용

1) 노동법규 이론적 근거

- 태국에서는 1972년 3월 16일 각각의 법률적 특징을 나타내는 혁명 평의회 포고령 제103호가 존재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제정해진 노동보호법(The Labour Protection Act B.E.2541)이 1998년 2월 20일에 관보에서 공포되어 동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중앙·지방 행정 기관·자치체, 국영기업 및 성령으로 정하는 사용자를 제외한 조직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 내용은 일반 노동 조건과 임금, 복지, 여성노동, 연소노동, 노동안전위생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법 제100조부터 제107조까지가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이며, 이 안전보건규정 속에는 안전규정과 함께 안전생산위원회 즉,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하지만 보다 권한이 폭넓은 규정이 제정되어있다.

2) 노동보호법의 일반규정

- 태국의 노동보호법은 1972년 3월 16일 혁명 평의회 포고령 제103호에 속해 근로자보호의 일부 보호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후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노동보호법(The Labour Protection Act B.E.2541)이

3) 五十川直行, タイ民商法典の比較法的考察, 「法政研究」62-3, 4, 1996.

1998년 2월 20일 관보에 공포되어 동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지방 행정기관·자치체, 국영기업 및 노동부성령으로 정하는 사용자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 조직에 적용되며 주요한 규정은 일반 노동 조건, 여성 노동, 연소 노동, 최저 임금, 노동 복지, 노동 안전 위생·작업 환경, 취업규칙, 해고 수당, 노동자 복지 기금, 노동 감독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 1953년 제정된 노동보호법의 목적을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졌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민사 상업법으로 정해진 권리와 의무에 따라 노동자를 평등하게 처우해야 하며(법 제14조), 노동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에 대해 남녀를 평등하게 처우와(법 제15조) 사용자(boss) 또는 노동 책임자(a person who is a work chief), 노동 감독자(work supervisor), 노동 감독관(work inspector)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여성 노동자 또는 연소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6조).
- 노동보호법⁵⁾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를 보면 제1항에 중앙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이 적용되는 국유기업도 제외되고, 노동부 규칙으로 정해진 특정 종류의 사업장도 적용 제외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노동 보호법(1998년)은 Bumiphol Adulyadej 국왕에 의해 1998년 2월 12일에 공포하여 시행 되고 있지만⁶⁾ 적용대상의 사용자 의미를 보면 「사용자(boss)」란, 임금 지급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동의 한 사람을 가리킨다.
- 이외에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용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과 사용자가 법률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대신하여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사람, 사용자를 대신하여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사

4) 태국의 노동법의 적용은 사업장에 한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 국영기업체, 특별히 노동부령을 정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5) <http://www.dlpw.go.th/4.1.en.html> (1) 1972년 3월 16일의 혁명 의회의 성명 No.103, (2) 1972년 3월 16일(No.1), 1990년의 법수정 혁명 의회 성명 No.103에 따라 이미 본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본법의 조항에 모순되는 모든 법률, 규칙, 그 외의 법령은 본법으로 옮겨놓고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 관보로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18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2조).

람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을 넓게 사용자로 본다. 즉 다시 말하면 사업자는 근로의 감독과 함께 근로자에게의 임금 지불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취직 알선업은 아니지만 사업주의 책임아래에 제조 또는 근로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어진 업무와 함께 도급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으로 고용했을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동법 제5조7).

- 「근로자(employee)」는 그 명칭이 어떠한 것이어도, 임금을 받아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하는 것을 계약한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노동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지고 있다.

3) 노동보호법의 산업안전규정

-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장관공고(Ministerial Notification)에 규정되어 있다.
 - 기계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Safety in the Use of Machinery)
 - 환경조건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Condition)
 - 환경(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Cheical Substance))
 - 전기와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nection with Electricity)
 - 대기작업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nection with Atmospheric Work)
 - 건설현장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nection with Construction Site(Diving))
 - 건축장 발판의 사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the Use of Scaffolding)

7) 「사업주(employer)」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의 일부 또는 모두를 행하는 다른 인간을 고용해, 일의 성과의 담보로 고용의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원청계약자(first level contractor)」란, 사업주의 의도하는 기간, 일의 모두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에 합의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청 계약자(sub-contractor)」란, 원청계약자의 책임아래에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의 모두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으로 원청계약자와의 합의가 성립한 사람을 가리킨다.또, 하청 계약이 몇 단계 있는 것에 관계없이, 하청 계약자의 책임아래에 하청 계약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하청 계약자와 합의한 사람을 가리킨다.

- 피고용인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of Employees)
- 건설 작업(건설현장)의 안전(Safety at Work in Construction: Construction Sites)
- 기중기 작업의 작업안전(Safety at Work in Crane Work)
- 말뚝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Piling)
- 환기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Places Lacking Ventilation)
- 위험한 작업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 라디에이터와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Related to Radiators)
-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in High Places, from Falling Objects and Erosions)
- 피고용인의 안전과 관련된 작업장에서의 화재예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Safety at Work Relating to Fire Prevention in Regards for the Employee's Safety)

○ 태국의 산업안전보호규정은 노동법 제100조부터 제107조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이며 주로 산업안전에 관련한 기초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특히 태국의 노동관계규정을 관할 하는 기관은 노동보호국으로 우리나라 노동부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그 산하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기관으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ailand)를 두고 있으며, 주로 산업안전 보건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산업안전에 관련한 규정은 노동부령으로 제정되어진 시행령이 주로 안전보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주 의무

○ 산업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은 근로감독관(법 제104조)이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와 부령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이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한 시간 안에 근로자가 작업에 사용하거나 그 작업과 관련된 기구, 기계 등을

8) 산업안전 관련 법조항은 노동사회복지부 통지 CIS 99-363 (근로자 안전 관련, 1997년), 노동사회복지부 통지 CIS 99-704 (안전, 보건 및 근로환경 조건 위원회 관련, 1995), 노동복지보호국 통지 CIS 97-717 (운영 관련 종업원 대표 선출 절차 규칙 관련, 1995), (www.labour.go.th).

9) <http://www.oshthai.org/index.aspx>

적합하게 수리하거나 구비해야 하며, 근로장소, 건물,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서면으로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으며(법 제107조) 검진결과는 근로자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나) 산업환경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 태국에는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00조).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사회복지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보호 복지국장, 보건국 대표, 공장관리국 대표, 공무원국 대표, 공해관리청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으로 임명한 사업주 대표, 노동자 대표 각각 7인과 노동부 장관이 위원, 비서로 임명한 노동보호복지국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두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법 제101조)을 살펴보면 우리와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산업 환경의 발전과 보건 안전 정책 계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안하며, 법의 수행을 위한 규정, 시행령, 부령 등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시와 근로자의 산업환경안전보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정부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산업환경안전보건 위원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노동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을 준수하거나 장관의 위임 사항을 수행하기도 한다.
- 그러므로 임금에 관한 사항, 임금위원회참가와 임명권, 임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의 임명과 임기, 등을 필요에 따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¹⁰⁾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수행할 사업장 안전보건의 행정과 집행에 관한 규제기준 부령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동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작업장의 환경, 건물 장소 기계 또는 도구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동사회복지국장 또는 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허가를 받아 근로감독관은 기계나 기구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5조). 그리고 근로

10) 법 제102조에는 일반적인 기준을 동법 제78조 제2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3조와 제84조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산업안전, 위생, 환경보건 위원회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관의 지시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시 30일 이내에 산업안전환경보건 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산업안전환경보건 위원회에서 판결결과를 우선 지키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06조)¹¹⁾.

4) 공장법

- 공장법(Factory Act, 1992년)은 물건의 제작과 가공, 조립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과 위생규정을 정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보호와 환경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총 부칙을 포함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²⁾, 제1조부터 제6조는 일반규정과 범위이고 제1장 공장경영(제7조~제31조), 제2장 공장관리 감독(제32조~제44조), 제3장 벌칙조항(제45조~제65조), 제4장 부칙(제66조~제68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공업부 장관의 권한으로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제정되어진 것이다¹³⁾.

11) 노동보호법 제8장(직장의 안전, 위생, 환경) 관한 내용을 보면

제100조 노동 사회 복지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노동 보호 복지 국장, 보건국 대표, 산업 공장국 대표, 공적 사업국 대표, 공해 관리국 대표, 대신으로 임명된 사용자 대표 7명, 노동자 대표 7명, 위원회의 위원겸서기관으로서 대신으로 임명된 노동 보호 복지국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안전·위생·환경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1조 안전·위생·환경 위원회는 이하의 권한과 책무를 진다: (1) 노동자의 안전, 위생, 환경의 향상에 관한 정책, 계획, 시책에 대해 대신에 제언한다. (2) 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대신 규칙, 고시, 규제의 공포에 대해 대신에 제언한다. (3) 노동자의 안전, 위생, 환경의 향상에 관해서 공적 기관에 제언한다. (4) 안전, 위생, 환경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로서 또는 대신의 생명에 따라, 본법 또는 그 외의 법률로 나타난 내용을 실행한다. 제102조는 동법 제78조 제2항, 제80,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3, 제84조에 필요한 변경을 더해 안전, 위생, 환경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103조는 대신은 직장의 안전, 위생, 환경의 관리 및 조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대신 규칙을 공포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항에 근거하는 대신 규칙으로 문서 또는 보고서의 작성이 정해진 기준이나 수속을 채워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대신 규칙은 또, 등록이나 등록의 취소의 기준과 수속, 본법의 마지막 금액을 넘지 않는 등록금, 담당자가 부과하는 서비스료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제104조 사용자가 제103조에 근거해 공포된 대신 규칙에 위반하거나 이것을 채우지 않은 것을 노동 감독관이 발견했을 경우, 노동 감독관은 그 사용자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올바르게 적절히, 노동 환경 조건, 건물이나 가옥을 개선하거나 노동자가 업무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는 기계나 설비를 준비 또는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내는 권한을 가진다. 제105조 노동 감독관이 노동 환경 조건, 건물, 가옥, 노동자가 이용하는 기계, 설비가 노동자에게 있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사용자가 제104조에 근거하는 노동 감독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경우, 노동 감독관은 국장 또는 국장으로 임명된 인물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계나 설비의 모두 또는 일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노동 감독관으로부터 제1항 아래에 기계 또는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명령받은 사용자는, 사용자가 노동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올바르게 일을 진행시킬 때까지 노동자가 일을 중지한 기간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노동일의 임금에 동일한 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6조는 명령의 고지일부터 기산해 30일 이내에 제104, 제105조에 근거하는 노동 감독관의 명령에 대한 이의를 안전, 위생, 환경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동위원회의 결정이 최종결정이 된다. 제1항에 근거하는 이의는 안전, 위생, 환경 위원회가 그 이외의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노동 감독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제107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 그 결과를 노동 감독관에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대신 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수속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 BHUMIBOL ADULYADEJ(프미폰·마돈야테이트) 국왕의 서명으로 B.E.2535년 동국왕 생전 47년 4월 2일 제정 선포되었다.

13) intrans@asiaaccess.net.th ; 공장법B.E.2535(1992년)라고 칭하며(법 제1조), 공포 된 날부터 90일 후에 시행되며(제2조). 이전의 법률인 공장법B.E.2512(1969년), 공장법(No.2) B.E.2518(1975년), 공장법(No.3) B.E.2522(1979년)은 폐지되어 이 법을 적용하기로 한다(법제3조).

- 공장법의 주요한 안전위생 관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업부 대신은, 공장의 조업이 국민 또는 환경에 미칠 우려가 있는 방해, 손해 및 위험의 수준에 준수하고, 그것들에 대한 억제 및 방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장을 3종으로 분류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는 권한을 가진다¹⁴⁾.
 - ② 공업부 대신은, 공장의 조업의 관리 때문에 공장의 방법 또는 일부가 적합해야 할 내용에(안전 위생에 관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만 게재)관한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⁵⁾.
 - ③ 제1종으로부터 제3종까지의 공장에 근거하는 성령 및 공업부대신에 고시에 적합해야 하는 것.
 - ④ 제2종 공장의 조업 개시와 관련되는 신고에 관한 사항(면허자의 신고 수리서를 받은 날로부터 조업 가능)
 - ⑤ 제3종 공장의 설치 면허에 관한 사항(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간)
 - ⑥ 기계류의 시운전에 관한 사항
 - ⑦ 제3종 공장의 확장 허가에 관한 사항
 - ⑧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 및 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항
 - ⑨ 담당관의 권한(공장에의 출입, 제조물, 용기, 문서등의 검사등)에 관한 사항
 - ⑩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사항
 - ⑪ 공장에 대한 개선 명령, 조업서지명령 및 공장 폐쇄 명령에 관한 사항

가) 일반규정의 적용범위

- 공장법의 적용범위는 물건의 제작, 가공, 조립이라고, 포장, 수리, 보수, 시험, 개량, 변경, 공급, 저장 또는 해체를 위하여 기계 장치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기계의 총 합계가 5마력 이상의 기계 장치 또는 7명 이상의 노동자(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사무직은 제외)를 사용하는 건물, 장소 혹은 차량등에 해당하는 작업장을 적용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계되는 국영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되는 공장 운영상의 가이드 라인은 본법에 따르는

14) 제1종은 공장에서 공장주가 즉시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 제2종은 공장의 조업을 하려고 할 때, 면허자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종, 제3종은 공장의 설치 이전에 해당 설치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용지, 환경,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 공장의 조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또는 물건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 공장 내 또는 주변의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생산 공정 및 공장의 조업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방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공장 경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법 제4조). 공장의 의미는 기계류의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관규칙으로 규정하는 종류의 공장과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류 설치와 건물을 건설, 또는 공장 운영 및 설치등에 관한 범위가 이 법에 해당된다¹⁶⁾.

나) 공장경영의 기본원칙

○ 공장법에서는 공장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진다.

(1) 공장의 인가원칙

○ 공장의 경영자는, 공장의 가동이 되어 질 때에는 공장의 인가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 근거하여 공포되는 장관규칙의 기준과 해당 장관규칙에 따라 공포되는 통고 및 근거에 따라 인가되며, 인가가 되기 전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공장인가의 신청, 검토를 위한 절차신청 및 인가서 발행의 검토기간에 관해서는, 장관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법 제12조). 신청자가 인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승인을 받기 위한 검토를 하고 관보에 공시된 장관의 기준 규정에 따라 인가자는 인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그리고 인가는 조업 개시일의 15일전까지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동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공장 조업전에 기계류의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 15일전까지 시운전의 일시 및 기간을, 인가 보관 유지자는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에게 통지한다. 인가서의 유효기간은, 조업 개시의 해부터 5년째의 말일까지로 하며, 단, 공장이 양도되거나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서가 발행된 날이나 또는 해산한 날에 인가는 실효하도록 되어있다(동법 제14조).

○ 인가를 갱신하는 경우는, 실효전에 인가 보관 유지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갱신기간내에 기한내에 인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신청자가, 공장의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가 실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규정의 기간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다¹⁷⁾.

16) 「공장 경영」이란, 공장의 경영에 근거하고, 제작, 제조, 조립, 곤포, 수리, 보수, 시험, 개수, 개조, 수송, 저장, 또는 해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기계류의 시운전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계류」란, 물, 증기, 공기, 가스, 전기등의 모든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의 생산, 변환, 혹은, 전도를 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수의 부분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또, 설비, 탄력차의 활차, 컨베이어·벨트, 샤프트, 기어등의 관련해 작동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공장 확장신청

- 공장의 확장신청은 인가자의 허가가 없는 한, 인가 보관 유지자에 의한 공장의 확장은 인정받지 못하며, 공장 확장 신청, 공장 확장의 승인 신청, 및 공장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명령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변경한 확장신청을 적용한다(동법 제18조)¹⁸.

다) 공장의 관리감독

- 공장의 관리감독은 경제성,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나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장관의 자문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장관은 관보로 공포를 통하여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¹⁹. 상임 장관 또는 상임 장관의 임명에 의한 담당관은,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의 명령에 공장 경영자가 따르지 아니할 경우 명령 준수를 위하여 지도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때에 실비 및 실비의 연율 30%의 벌금을 공장 경영자는 지불하며, 정부의 개입에 의해, 공장이 일으킨 공해문제나 환경에의 영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국내의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계하는 법률에 근거해 환경 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이 지불된다(동법 제42조)²⁰.

17) 공장의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가 실효일부 60일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인가갱신 규정의 기간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공장은 인가 보관 유지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단, 인가 갱신이 인정된 시점에서, 해당 신청자는, 갱신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실효일부 60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절차상 신청으로서 처리된다(동법 제15조). 인가서를 발행하지 않는, 또는, 갱신하지 않는 취지의 명령에 대해서, 인가 또는 갱신의 신청자는, 명령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최종결정은 장관이 실시한다(공장의 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인가 실효일부 60일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규정의 기간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여져 또, 해당 기간중, 공장은 인가 보관 유지자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단, 인가 갱신이 인정된 시점에서, 해당 신청자는, 갱신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실효일부 60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절차상의 신청으로서 처리된다(법 제16조).

18) 공장의 확장에 한정하지 않고, 생산 활동 혹은, 원동력이나 기계적 에너지로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인가 보관 유지자가 증설 혹은 개조했을 경우나 공장 업무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공장 건물 면적을 확장 혹은 증설했을 경우에는 (단, 공장 건물 면적이 200평방 미터 이하의 경우 50평방 미터(50평방 미터 포함한다)까지의 확장으로 해, 200평방 미터를 넘는 경우는 100평방 미터(100평방 미터 포함한다)까지의 확장으로 하는) 기계류를 증설, 혹은, 개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건물 면적을 확장, 혹은, 건물을 증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가 보관 유지자는, 적당,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에게 문서로 통지해, 장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기계류의 증설, 변경 혹은 개조, 공장 건물 면적의 확장, 또는 건물의 증설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9) 전국에서 설립 혹은 확장되는 각종의 공장의 수 및 규모를 정하고, 또는, 설립 혹은 확장되지 않는 각종의 공장의 수 및 규모를 규정하며, 원료의 종류, 품질 혹은 비율, 원료 원산지, 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혹은 생산하는 에너지의 수단 혹은 종류를 규정한다. 그리고 설립 혹은 확장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 또는 품질을 규정하며, 특정의 업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 혹은 확장되는 공장의 제품, 또는, 전부 혹은 일부가 수출되는 제품을 규정한다.

20) 정부가 개입한 공장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 공장 경영자로부터 지불되었을 경우는 환경 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진다.

라) 벌칙규정

(1) 5,000바트 벌금

- 공장인가서 게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가 보관 유지자에게는 5,000바트²¹⁾ 벌금이 적용 된다.

(2) 2만바트 벌금

- 장관 규칙 또는 해당 장관 규칙에 통고에 위반하거나 또는 따르지 않는 경우와 공장 경영자가 조업에 관해서 안전에 관하여 정확하고 충분히 통지하지 않았던 경우, 안전사고통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가 보관 유지자와 사고발생시 사고발생통지를 통지 준수하지 않는 공장 경영자는 2만바트 벌금규정이 정해져 있다.

(3) 20만바트 벌금

- 행정규정과 통지에 위반한 경우는 20만바트 벌금이 주어진다.

(4) 1개월 이하금고 혹은 2만바트 벌금

-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1개월 이하금고 혹은 2만바트 벌금이 주어진다.

(5) 6개월이하 금고 혹은 5만바트 벌금

- 공장 확장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에게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보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하 금고 혹은 5만바트 벌금이 주어진다.

(6) 1년이하의 금고 혹은 10만바트 벌금

- 관할권이 있는 담당관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봉인한 기계류를 작동시키려고 하거나,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금고 혹은 10만바트 벌금이 주어진다.

(7) 2년이하의 금고 혹은 20만바트의 벌금

- 인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공장 확장허가를 받지 않은 인가 보관유지자와 조업정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이 내린 후 공장을 조업한 경우

21) 태국의 1바트는 약30원(원화)이며, 1달러는 31.55바트임(2007년 11월12일 현재).

는 2년이하의 금고 혹은 20만바트의 벌금이 주어진다.

(8) 4년이하의 금고 혹은 40만바트의 벌금

- 설립되는 공장의 규모 또는 설립되지 않는 공장의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금고 혹은 40만바트의 벌금이 주어진다.

마) 공장법에 관한 시행령

- 199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장법에 근거하여 공업시행령이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정되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1) 시행령 제2호

- 시행령 제2호(Ministerial Regulation (No.2) Issued under Factory Act 1992)는 공장 건물 및 공장내의 기계 설비가 구비해야 할 요건 및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공장의 건설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았으며, 공장건설 금지 구역, 공장 구조 요건, 작업장의 넓이(노동자 일인당 3평방 미터 이상), 화장실의 기준,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에 관한 안전요건, 보일러,등의 설치에 관한 안전 요건, 위험 유해물을 보유에 관한 안전 설치에 관한 요건, 크레인 및 호이스트의 안전 장치에 관한 요건, 컨베이어의 안전 방호에 관한 요건, 전기 배선 및 전기 설비의 설치에 관한 요건, 보일러등의 조작자 안전 조치를 준수규정과 어떠한 종별의 공장과 기계, 설비 및 물건에 관한 안전 조치를 준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 시행령 제3호

- 시행령 제3호(Ministerial Regulation (No.3) Issued under Factory Act. 1992)는 안전에 관한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용중의 보일러의 안전성, 건조 또는 수리된 보일러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방사성 물질의 안전사용, 위험한 물질에 관한 MSDS의 작성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있다.

(3) 시행령 제4호

- 시행령 제4호(Ministerial Regulation (No.4) Issued under Factory Act.

1992)는 공장의 조업 개시에 관한 규정과 공장작업수행 인가자에 관한 허가 규정 및 준수에 관한 내용이 제정되어있다.

(4) 시행령 제5호

- 시행령 제5호(Ministerial Regulation (No.5) Issued under Factory Act. 1992)는 공장의 설치 면허 신청등의 양식 및 면허자에 대한 허가절차등이 있으며, 공장의 설립의 승인을 받은 기계류의 상세한 레이아웃, 공장 건물의 계획 및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5) 시행령 제6호

- 시행령 제6호(Ministerial Regulation (No.6) Issued under Factory Act. 1992)는 공장의 기계류의 시운전에 관한 안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 산업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여러규정

가) 2006 산업환경안전보건 행정과 처리 규정에 관한 장관령

(1) 제정이유

- 산업안전 환경보건을 위하여 근로 또는 그와 관련된 일에 의한 질병, 재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작업장의 안전과 행정처리에 관한 장관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하였다²²⁾. 여기서 산업안전 담당관은 사업주가 전문가나 기능자 최고기능자, 관리자, 과장급의 산업안전 담당 책임자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수행근로자는 라 함은 일을 수행할 의무를 지닌 근로자를 말한다. 위원회는 사업장 환경안전보건 위원회를 말하며, 안전 사무소 사업주가 사업장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업무를 수행, 관리하게 하는 산업환경 안전보건 사무소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장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각각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2) 적용범위

- 이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업장 또는 작업

22) 이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35조, 제48조, 제50조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진, 노동보호법(불기 2541년, 1998년) 제6조와 제3조에 의거하여 노동부 장관이 제정할 권한으로 제정된 장관령이다.

을 규제한다(시행령 제1조).

- ① 광산, 탄광, 석유 또는 석유화학 관련 업무
- ② 조선, 도시개발, 전력,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기초자원의 제조, 생산, 조립, 적재, 수리, 보수, 보호, 개선, 정비, 강화, 개량, 가공, 제거, 철거 등의 업무
- ③ 건물, 공항, 철로, 전차로, 지하철, 항구, 조선소, 배를 대는 다리, 수로, 도로, 제방, 터널, 교량, 배수로, 하수도, 전신, 전화, 전기, 가스, 상수도의 건설, 증축, 설치, 보수, 수리 또는 기타 건설 관련 업무
- ④ 육로, 수로, 항로를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수송관련 업무
- ⑤ 석유 또는 가스를 충전하는 곳
- ⑥ 호텔
- ⑦ 백화점
- ⑧ 병원
- ⑨ 금융기관
- ⑩ 의료검사기관
- ⑪ 스포츠, 오락시설
- ⑫ 생명, 화학분야 기관
- ⑬ ①~⑫까지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 ⑭ 기타 노동부에서 정한 작업

(3)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과 실습을 마련해야하며, 모든 직위에 산업안전 담당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여 관리, 감독,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동 시행령 제3조).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내 산업안전 지침서²³⁾와 규정을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한다. 또한 사업장에 권한 대리자가 업무를 하는 경우(동 시행령 제4조)와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동 시행령 제5조)에도 사업주는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침서와 규정을 비치해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위험요소에 그로하게 하는경위도 위험요소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안전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6조).

(4) 산업안전관리제도

- 이 시행령에서는 산업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관리자들

23) 산업안전 지침서'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 작업 수행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은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가) 과장급 산업안전관리자

i) 배치기준(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과장급 근로자를 과장급 산업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과장급 산업안전 담당관의 임명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8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과장급 근로자를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과장급 근로자를 임명한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 과장급 산업안전 담당관은 노동보호국 국장이 정한 방법과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 한 자, 1997년 제정된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사회복지 시행령에 따라 현재 과장급 산업안전 담당관 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동시행령 제8조)

ii) 산업안전 담당관의 임무

- ㉠ 담당 부서의 근로자들이 3항의 규정과 지침을 따라 근무하도록 관리, 감독
- ㉡ 기능공급,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산업안전 담당관과 함께 기초 재해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업무를 분석
- ㉢ 담당 부서의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
- ㉣ 매일 작업을 마치기전 작업 기구, 도구, 기계 등의 안전 검사
- ㉤ 담당 부서 근로자들의 개인 안전 보호구 관리, 감독
-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질병, 사고 등을 사업주에게 보고, 사업장 안전 사무소에 보고하도록, 기능공급,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산업안전 담당관에게 보고한다.
- ㉦ 기능공급,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의 산업안전 담당관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질병, 사고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와 문제의 해결안을 제안한다.
- ㉧ 산업 안전 관련 활동의 지원, 후원
- ㉨ 관리급 산업안전 담당관이 위임한 산업 안전 분야의 기타 업무

(나) 기능공급 산업안전관리자

i) 배치기준(동시행령 제10조 제1항)

- 위의 내용에 따라 ②~⑤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가 10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 한명을 1일 1시간 이상의 산업안전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능공급 산업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해야한다(동시행령 11조).

ii) 자격기준(동시행령 제11조)

- 기능공급 산업안전 담당관은 주어진 자격중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있다²⁴⁾.

iii) 임무(동시행령 제12조)

- 기능공급 산업 안전 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²⁵⁾.

(다) 최고기능공급 산업안전관리자

i) 배치기준(동시행령 제13조 제1항)

- 위의 내용에 따라 ②~⑤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11조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 한명을 1일 1시간 이상의 산업안전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고기능공급산업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ii) 자격기준(동시행령 제14조)

- 최고 기능공급 산업 안전 담당관은 필요한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있다²⁶⁾.

iii) 임무(동시행령 제15조)

- 최고 기능공급 산업 안전 담당관은 필요한 임무를 지니도록 되어있다²⁷⁾.

24) ① 보건관련 학사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학력의 소지자. ② 과장급 산업 안전 담당관이고, 노동 보호부 장관이 정한 규칙과 방법의 훈련을 이수한 자. ③ 1997년 3월 31일 제정된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 담당관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

25) ① 사업주가 산업 환경 안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제안, 감시한다. ② 보호규정과 안전한 작업 절차 등을 포함하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 분석. ③ 3조의 규정과 지침을 근로자들이 잘 수행하도록 안내 ④ 사업장내 재해, 사고, 질병 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사업주에게 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다. ⑤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 사고, 질병에 관해 통계 수집, 보고, 제안. ⑥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분야의 업무 수행

26) ① 보건관련 학사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의 소지자. ② 기능사, 기사, 기능학사, 초대졸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이고,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 ③ 중등교육 6년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소지자 이고 5년 이상 기능공급 또는 기초 산업안전 담당관의 책임을 역임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자 .

27) ① 사업주가 산업 환경 안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제안, 감시한다. ② 보호규정과 안전한 작업 절차 등을

(라) 전문가급 안전관리자

i) 배치기준(동시행령 제16조 제1항)

- 위의 사업장의 내용중에서 ①의 사업자 중 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제1조의 ②~⑤의 사업장 중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7조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안전관련 분야의업무를 위해서 적어도 1명이상 전문가급 상임 산업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²⁸⁾.

ii) 자격기준(동시행령 제17조)

-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은 필요한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있다²⁹⁾.

iii) 임무(동시행령 제18조)

-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은 산재 예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³⁰⁾.

(마) 관리자급 안전관리자

i) 배치기준(동시행령 제19조 제1항)

- 관리자급 안전관리자는 위의 ①~⑤의 사업장 중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이거나 제1항의 ⑥~⑭의 사업장중 근로자가 10명이상인 사업장은 제

포함하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 분석. ③ 각부서의 제안과 계획을 분석, 사업주에게 산업 안전 수칙 제안. ④ 산업 안전 보건 규정과 계획에 따라 사업장 업무 수행 예산 검토. ⑤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지침을 근로자들이 잘 수행하도록 안내. ⑥ 사업장내 위험 발생 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내, 교육, 훈련. ⑦ 사업장내 재해, 사고, 질병 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사업주에게 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다. ⑧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 사고, 질병에 관해 통계 수집, 보고, 제안. ⑨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분야의 업무 수행

28)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의 임명은 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9) ① 보건관련 학사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학력의 소지자. ② 학사 소지자 이상이고, 5년 이상, 최고 가능공급 산업안전 담당관으로 근무했으며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노동사무소로부터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 ③ 1997년 3월 31일 제정된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써, 제19조 ③,④ 그리고 ⑤의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노동사무소로부터 훈련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자.

30) ① 사업주가 산업 환경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제안, 감시한다. ② 보호규정과 안전한 작업 절차 등을 포함하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업무 분석. ③ 산업안전 분야의 예산 검토. ④ 각 부서의 제안과 계획을 분석, 사업주에게 산업 안전 수칙 제안. ⑤ 산업 안전 보건 규정과 계획에 따라 사업장 업무 수행 예산 검토. ⑥ 3조의 규정과 지침을 근로자들이 잘 수행하도록 안내. ⑦ 사업장내 위험 발생 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내, 교육, 훈련. ⑧ 사업장 환경 조사, 예측 또는 노동부에 보증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또는 사업장 내 산업 환경 보사 보고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⑨ 사업장에 산업 환경 안전 처리와 효율적 발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제안. ⑩ 산재, 질병, 사고 등의 원인분석과 결과 보고,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대책보고. ⑪ 통계 수집, 자료 분석, 보고, 근로자의 산재, 재해 질병 등에 관한 제안. ⑫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분야의 업무 수행

20조의 자격을 갖춘 관리직 근로자를 관리자급 산업 안전 담당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관리자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관리자급 산업안전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리자급 산업안전 담당관의 임명은 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사업주가 관리자급 근로자를 새로이 임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자급 근로자를 임명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다.

ii) 자격기준(동시행령 제20조)

- 관리자급 산업안전 담당관은 관리자급 근로자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적합한 하나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즉, 노동부장관이 정한 규정과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이거나, 1997년 3월 31일 제정된 근로자의 산업 안전에 관한 노동부시행령에 따라 관리자급 산업안전 담당관 이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iii) 임무(동시행령 제21조)

- 관리자급 산업안전 담당관의 임무는 각 산업 안전 담당관의 관리와 통제, 사업주에게 관할 사무소의 산업 안전 분야의 계획 보고, 사업장에 적합한 산업안전 분야의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 지원, 원조, 그리고 산업 안전 담당관, 위원회, 또는 안전 사무소로부터 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직급의 산업안전 담당관들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동시행령 제22조).

(5) 사업장의 산업 환경 안전보건위원회

i) 설치기준

-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 환경 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사업장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제정되어있다. 위원회 설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들은 이법의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건을 구비하여 산업 환경 안전보건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³¹⁾.

31) ①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주 또는 사용자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급 사용자대표 1인, 근로자대표 2인 을 위원으로 하며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을 위원 또는 비서로 임명한다. ②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사업장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주 또는

ii) 임명과 의무

- 위원회의 임명은 관리자급 또는 통제자급 사업주 대표는 사업장 지정 의료기관 또는 의사중 사업주가 사업주 대표 위원으로 임명하며, 근로자 대표 위원의 선출은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규정과 방법에 따라 선거하여 임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시행령 제24조).
- 위원회의 의무는 사업장내의 사고와 재해, 질병예방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의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한다³²⁾.

iii) 회의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주는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의 제안 의결 사항을 검토, 실행해야 하며, 언급한 의결과 제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동 시행령 제30조), 회의의 주제와 진행은 민주적 의결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주는 위원회와 산업안전 담당관의 의무 및 활동을 지원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연의 임무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써의 지위 및 의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31조).

(6)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 사무실설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외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동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는 사무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 인원에 따라 사무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³³⁾.
- 이러한 산업 안전 사무실의 업무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과안전보건의 교

사용자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자급 사용자대표 2인, 근로자대표 3인 을 위원으로 하며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을 위원 또는 비서로 임명한다. ③ 근로자가 500명 이상 사업장은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업주 또는 사용자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자급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5인을 위원으로 하며 최고 기능공급 또는 전문가급 산업안전 담당관을 위원 또는 비서로 임명한다.

- 32) ① 사업장 내 사고와, 재해, 질병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며, 사업주에게 사업장내 위험에 대해 알리고 정책 및 계획을 심사한다. ② 사업장 내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 규칙과 사업장내 안전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정책과 규정을 시정하도록 제안한다. ③ 사업장내 산업안전 관련 활동의 지원, 원조. ④ 3항의 규정과 지침서를 검토, 사업장 산업 안전 기준을 사업주에게 제시. ⑤ 산업 안전 분야의 업무 수행 및 매달 1회이상 사업장 산재 통계 검토. ⑥ 사업주에게 산업안전관련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근로자, 과장, 관리자, 사업주, 그리고 전 직원의 산업안전 교육에 관해 검토. ⑦ 모든 직책, 모든 근로자가 수행하는 위험 환경 보고 제도 마련. ⑧ 사업주에게 제안한 사항을 진행, 추진. ⑨ 연간 업무 보고, 작업장내 사고 장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 ⑩ 사업장 산업안전 관련 업무 수행결과 산정. ⑪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관련 업무 수행
- 33) 시행령 제33조 해당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가 2명이인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 또는 근로자가 200명 이상이 된 날부터 360일 이내에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 사무실이 근로자의 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1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육등을 담당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련 업무와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동 시행령 제34조)³⁴⁾.

(7) 신고, 서류제출, 증거서류 보관

-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규정한 방법과 규칙대로 노동부에 등록하여 안전담당자이름을 신고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34조). 위원회의 명부와 책임을 노동사회 복지국장에게 위원회를 임명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동 시행령 제41조).

나) 2004년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업 환경 안전보건 행정과 처리에 관한 장관령

(1) 제정이유

- 태국에서는 일반사업장외에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업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노동부장관령으로 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장관령은 제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로 공기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⁵⁾.
- 이 규정에 말하는 밀폐된 공간이라 함은, 공기의 배출 유입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내부에서 작업이 위험한 환경을 말하며, 산소가 19.5% 미만이거나 23.5% 이상인 경우나 공기 중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의 밀도가 화학물질 최저 밀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졌다(동 시행령 제2조).

(2) 사업주의 의무

- 이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된 공간의 출입구에 정확히 알아볼 수 있

34) 시행령 제34조에 ① 사업장내 재해를 없애기 위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 ② 사고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제안. ③ 근로자 또는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장내 산업 안전에 대한 규정과 지침서 비치. ④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관계자가 업무 수행시 착용하도록 적합한 개인 보호구 종류를 규정하여 마련하도록 협조. ⑤ 근로로 인한 산재나 질병의 발생 원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내 각종 사무소의 업무 수행과 학술조사 등의 지원과 원조. ⑥ 신입 사원이 일을 수행하기 전 산업안전에 대한 규칙과 기초 지침을 교육하며 뿐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종류의 업무를 하게 하는 근로자도 교육해야 한다. ⑦ 산업 안전과 이와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 협조, 사업장내, 사업장 이외,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⑧ 사업장 안전 제도 예상, 조사. ⑨ 각급 산업 안전 담당관의 산업 안전 관련 업무의 진행 및 결과 수집과 사업장의 산업 안전 관련 정책과 계획의 결과 보고, 이는 매 3개월마다 사업주 및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⑩ 사업주가 위임한 기타 산업안전 관련 업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35) 이 시행령은 헌법 제31조, 제35조, 제48조, 제50조에 근거하고, 노동보호법(불기 2541년, 1998년) 제6조와 제3조를 근거로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는 크기로 밀폐공간, 위험,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해서 위험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받은 자만이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3조, 제4조).

-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밀폐된 공간의 작업을 허가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동 시행령 제18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업 안전 훈련을 받은 근로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대리자로 임명할 수 있되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동 시행령 제21조)³⁶⁾.

(3)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 또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밀폐된 공간의 대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검사일지를 작성하며 공기의 상태를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위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6조).

- 또한 밀폐공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규정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22조).

다) 2004년 잠수속 밀폐된 공간에서의 산업 환경 안전보건 행정과 처리에 관한 장관령

- 밀폐공간의 작업안전규정의 보호조치가 있지만, 이외에 잠수된 밀폐 공간에서 작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잠수에 관한 근로자 위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듯이 태국에서도 위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보호 조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헌법에 근거하여 노동보호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명령으로 제정되어진 것이다.

6) 노동사회복지성고시에 관한 종업원의 안전고시

가) 제정 이유

- 노동부에서는 종업원의 업무상의 안전을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36) 동시행령 제19조, 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허가. ② 근무 일, 근무 시간. ③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가 하는 일. ④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허가를 받은 근로자의 이름. ⑤ 7조에 따른 근무 관리자의 이름. ⑥ 8조에 따른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름. ⑦ 근로자가 일하기전 안전 규정 사항. ⑧ 대기와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검사 결과. ⑨ 개인 안전 보호구와 생명 보호구. ⑩ 긴급한 위험 발생시 근로자의 대피. ⑪ 18조에 따른 허가자 이름과 명단, 책임자의 이름과 명단

하기 위하여 1985년(2528년) 5월 6일자 내무성 고시인 「종업원의노동안전」을 폐지하고 1972년(2515년) 3월 16일자 혁명 의회 포고령 제103호에 근거하여 노동부 고시 「종업원의노동안전」을 1997년(2540년) 3월 31일자로 제정 시행하였다. 그 후 노동부에서는 1997년(2540년) 3월 31일 노동부의 사회복지성 고시로 「종업원의노동안전」의 규정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실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내용을 수정 정리하여 시행하였다³⁷⁾. 그러므로 이 종업원의 노동안전에 관한 고시는 제1장 기초적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자, 제2장 직장의 안전 관리자, 제3장 경영 간부의 안전 관리자, 제4장 전문직의 안전 관리자, 제5장 잡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본고시가 적용되는 업종

- 노동부의 고시 「종업원의 노동안전」은 고시규정에 따라 업종³⁸⁾의 종업원 혹은 사업소에 적용된다. 그리고 적용되는 사업소의 규모는 각 사업소의 종업원수에³⁹⁾ 의해서 구분된다.

다) 안전관리자의 훈련과 임명

- 안전 관리자는 그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 혹은 사업소는, 종업원은 각각의 수준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로서의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 실무수준, 직장수준, 경영 간부수준, 전문직 수준의 안전 관리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는 해당 안전 관리자가 공석이 된 날보다 60일 이내에 동등의 자격을 가지는 안전 관리자를 보충으로서 임명해야 한다.

라) 안전 관리자의 자격

- 1997년(2540년) 3월 31 일자 노동부 고시 「종업원의 노동안전」에 의한 안

37) 1997년(2540년) 3월 31일자 노동부 고시 「종업원의노동안전」은 1997년(2540년) 4월 1일로 관보에 공시되어 그 시행일은 동 관보에 의한 공시일 부터 90일 경과후의 1997년(2540년) 6월 30일로 하였다.

38) 1. 채광, 채석, 석유·석유화학. 2. 선박의 건조를 포함한 물품·자산의 제조, 생산, 수리, 보수, 저장, 개량, 장식, 완성해 개조, 가공, 파괴, 해체, 발전, 변전, 전력 그 외 에너지의 공급. 3. 건물, 공항, 철도, 시가 전철, 항만, 도크, 부두, 수로, 도로, 댐, 터널, 교량, 배수관, 송수관, 전선, 전화, 전력, 가스등의 건설, 증설, 설치, 수리, 보수, 개조 및 해체, 및 공사의 준비, 기초공사를 포함한 그 외의 공사. 4. 선박이나 화물 컨테이너 의한 여객 혹은 화물의 수송 및 화물의 실음과 내림 5. 연료, 가스의 충전, 급유소. 6. 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그 외의 업종

39) 1.1명 이상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지는 사용자 또는 사업소는 작업원, 직장, 경영 간부 각각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는 사용자 또는 사업소는, 직장, 경영 간부, 전문직 각각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구성되는 안전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다.

전 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실무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직장 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경영 간부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전문직 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⁰⁾.

7) 처벌규정

- 벌칙규정은 노동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위반시에 벌칙을 부여하는 것으로 노동보호법위반에 관하여는 크게 5000 바트 이하의 벌금, 1만 바트 이하의 벌금,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5만 바트 이하의 벌금, 1개월 이하의 금고 혹은 2000 바트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금고 혹은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등의 7개의 벌칙규정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 이러한 벌칙 중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위반사실에 관하여 처벌규정이 되는 것은 3가지로 2만 바트의 벌금형과 6개월금고 혹은 10만바트의 벌금형, 1년이하의 금고 혹은 20만 바트의 벌금형만 주어지고 있다.
-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기계 또는 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명령받은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올바르게 설비사용을 행하지 못한 경우에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해 그 결과를 근로 감독관에게 보내게 되는데 장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또한 제103조에 근거한 장관의 시행령에 따라 증명서나 보고서의 확인 또는 조사의 허위 기재에 관한 사업주인 경우는 1년 이하의 금고나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되어있다.

40) 1. 실무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 (1) 종업원의 대표자로서 실무에 적합한 종업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2) 장관이 정한 노동 안전 훈련과정(30시간)에 합격한 사람,(3) 실무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로서 사용자가 임명한 사람.

2. 직장 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 (1) 직장 단위에 있어서의 업무를 올바르게 관리, 감독, 지도하는 임무에 있는 종업원. (2) 장관이 정한 노동 안전 훈련 과정(12시간)에 합격한 사람. (3) 직장에 적합한 안전 관리자로서 사용자가 임명한 사람.

3. 경영 간부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 (1) 사업소의 부문장 이상의 수준에 있는 종업원(ex. 공장장). (2) 장관이 정한 노동 안전 훈련과정(12시간)에 합격한 사람. (3) 경영 간부 수준의 안전 관리자로서 사용자가 임명한 사람.

4. 전문직 수준의 안전 관리자의 자격.

- (1) 직업 위생의 학사 과정 이상을 수료한 사람, 혹은 거기에 준하는 노동 안전, 직업 위생, 직장 환경을 포함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급 직업 면허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 장관이 정한 과정에서 훈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노동부가 공인한 직장에서 실시되는 과정에 합격한 사람. (3) 1985년(2528년) 5월 6일자 내무성 고시 「종업원의 노동안전」에 근거하는 노동 안전에 관한 훈련과 시험에 합격하여, 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한 훈련과 시험에 1회이상 합격한 사람. (4) 실무 수준의 안전 관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 과거 2년간에 연간 재해 발생율을 10%이하 감소시킨 실적이 있으며, 한편 국장이 정한 코스에 의한 훈련과 시험에, 노동부의 복지·보호국이 공인한 직장에서 실시되는 과정에 합격한 사람.

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 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보호법이 제정되어있고, 그 법의 근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시행령과 규칙들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각각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가장 강력한 법률은 공장법이라 볼 수 있다. 공장법에서 산업안전보건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안전규정이 마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며, 노동법에 있는 처벌규정이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특별법인 공장법의 처벌규정은 강력한 벌칙규정으로 되어있다.

1)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유사한 법률구조의 특징

- 서두에 설명되었듯이 태국은 그 고유법이 인도의 마누법전의 영향과 함께 발달하였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35년에 최종적으로 성립된 민상통일법전이 일본의 민법, 상법전의 합본에 가까워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법속에 고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노동보호법 제8장에 직장의 안전, 위생, 환경에 관한 규정 정리 되어있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과 구속력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노동법의 처벌규정 속에도 안전보건의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한 개의 조문만 두고 특별법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벌칙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있지만 태국의 노동보호법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8개의 조문과 그 위반에 관한 벌칙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2) 특별법에서의 폭넓은 처벌규정

- 태국의 산업안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장법으로 작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국의 공장법은 공장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만이 준수하도록 규정 되어있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부터 작업시까지 전반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에 관련한 모든 부분에 있어 안전보건에 위반될 경우에는 벌금형과 금고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벌칙규정이 넓은 것에 비하여 처벌

의 강도는 높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물가를 고려하면 벌금형이 높을 수도 있으나 아시아국가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처벌규정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지만 폭넓게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태국법의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에는 장관의 권한을 명시하여 공장작업의 인가와 허가사항을 규칙에 제정해 놓고 인가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¹⁾.

라. 소 결

- 태국의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은 일본에 영향을 받아 비교적 정리되어 있으면 체계와 구성이 효과적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영국법 후에는 프랑스법과 독일법의 영향과 함께 법전편찬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법률가역할로 1935년에 최종적으로 제정된 민상통일법전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민법, 상법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들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강력함이 없어 기업의 활동과 운영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 중에 처벌 규정의 포괄적인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 기타 장관공고에 다음과 같은 안전 규칙 명시

1. 기계의 사용과 관련된 안전
2. 환경조건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 (빛, 소리, 열)
3.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
4. 전기와 관련된 작업의 안전
5.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
6. 건설현장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
7. 건축장 발판의 사용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
8. 말뚝작업과 관련된 안전
9. 건설현장 비계 작업 안전
10. 낙하, 비래, 추락,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
11. 라디에이터와 관련된 작업의 안전
1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내 화재예방과 관련된 작업 안전

4.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주요활동

가.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1) 정부기구

가) 노동성(Ministry of Labour, MOL)

- 노동성은 노동안전위생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⁴²⁾ 노동안전위생감독과(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spection Division, OSHID)를 두고 노동안전위생 감독 행정전반의 기획·입안, 노동안전위생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안, 노동안전위생 관계 법령의 주지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그리고 노동 안전 위생 센터(National Institute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NICE)를 두고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노동 재해 및 직업성 질병 방지 시스템의 개발·개선, 기업 및 정부수준으로의 노동 조건 및 노동 안전 위생의 향상, 개선의 촉진, 작업 환경 측정 및 생물학적 시료의 정도 관리 및 분석, 기업에 대한 기술 서비스(건강진단, 작업 환경 측정, 개인용 보호도구의 시험등)의 제공,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연수·홍보등을 담당하고 있다.

2) 민간기구

가) 노동안전위생촉진협회(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Promotion Association Thailand - SHAWPAT)

- 노동 안전 위생의 추진,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보급,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사업의 수행 때문에,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과의 협력, 노동 안전 위생을 위해서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의 사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7년 9월 23일에 5명의 공동 창설자가 첫 회담을 가진 뒤 1987년 10월 22일에 첫 SHAWPAT 총회가 개최되어 19명의 이사로부터 이사회가 설치되었다. 노동 안전 위생의 추진,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보급, 노동 안전 위생에 관한 사업의 수행 때문에,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과의 협력, 노동 안전 위생을 위해서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의 사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42) 2002년 10월 3일, 부처 재편을 해 노동 사회 복지성은 사회·인간 개발성과 노동성에 분할되어 노동 보호 복지국은 노동성에 편입되었다.

나) 마히돈 대학 공중위생 학부

- 마히돈 대학은 타이의 국립대학으로, 노동 안전 위생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중위생 학부의 조직·직원 구성, 안전 위생 학과에 대하여 정리 하기로한다.
 - 공중위생 학부·노동 안전 위생 학과의 활동
- 노동 안전 위생 학과는 1998년에 제2빌딩의 6층의이전하고 새로운 시설에 의하여, 학과의 학술 프로그램, 연구 활동, 연수 코스등의 각종의 활동의 수준이 향상하고 있다.
- 노동 안전 위생 학과의 목표는 노동 안전 및 환경의 분야에 있어 고도의 능력을 가지는 학술 기관이 되어, 연구의 리더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 안전 위생학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있다.

나. 여성과 연소자 보호규정

- 여성 노동자의 사용⁴³⁾에 관한 규정은 태국의 노동법 제3장(제38조~제43조)에는 여성근로자 보호규정이며, 제4장(제44조~제52조)은 연소자 보호규정으로 제정되어있다.

1)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이나 몸에 유해하지 않은 경우 이외는, 지하, 수중, 동굴, 산의 터널 또는 갱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광 근로, 건설 노동.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교통편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로. 폭발물 또는 가연물의 제조 또는 운반. 노동부장관의 규칙에 정해진 그 외의 근로등을 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8조). 그리고 사용자가 22시부터 6시의 사이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를 명할 경우 노동감독관이 그 근로가 그 여성의 건강과 안전하게 유해하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노동감독관은 장관 또는 장관이 임명한 사람에게 보고하여 사용자에게 의한 근로 시간이나 근로 시간수의 시정을 고

43) 노동 보호법(1998년) (자료 출처(소) : International Translation Office 발행 「Labour Protection Act」)

려해 수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있다(법 제40조).

2) 임신여성의 보호규정

- 사용자는 임신부에게 22시부터 6시까지의 사이의 노동이나, 시간외 노동, 휴일 노동, 또는 이하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⁴⁴⁾. 그리고 임신부는 1회의 임신 기간 중에 90일 이하의 출산 휴가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임신부가 현재의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취지의 의료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근로자는 현재의 업무를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적당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법 제42조)⁴⁵⁾.

3) 연소 근로자의 사용

- 사용자는 근로자로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아니되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하와 같이 해야 한다
- 연소 노동자의 노동 개시부터 기산해 15일 이내에 연소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 노동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고용 조건을 사용자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변경했을 경우, 근로시간중의 노동 감독관의 사찰에 대비해 고용 조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연소 근로자의 고용 중지는 그 연소자가 노동을 중지한 날로부터 기산해 7일 이내에 노동 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법 제45조).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의 연속 노동 시간이 4시간을 넘기 전에, 그 4시간의 사이에 연소 노동자는 사용자가 정한 휴식 시간을 두어야 한다⁴⁶⁾.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 시간

44) 진동하는 기계 또는 엔진에 관련되는 노동. 탈 것으로 이동하는 노동. 15킬로를 넘는 무거운 것을 양손으로 들어 위로 옮기거나 어깨에 붓을 통하여 옮기거나 머리에 실어서 옮기거나 하는 노동. 선내 노동. 장관 규칙에 정해진 그 외의 노동등을 제한하고 있다(법 제39조).

45) 사용자는 임신부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법 제43조).

46) 사용자는, 국장 또는 국장의 임명한 인물의 허가를 얻을 수 있지 않으면,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에게 22시부터 6시까지의 사이의 노동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영화 배우, 쇼의 출연자들의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를 전향의 시간에 노동시킬 수 있다.이것에 관련하고, 사용자는 그 연소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 노동이나 휴일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⁴⁷⁾.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의 임금을 제3자에게 지불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측으로 부터 어떠한 목적으로도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사용자, 연소 근로자, 그 부모 또는 후견인이 고용의 발생하기 전이나, 고용 개시에 연소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 단계 이전의 시점에서 금전 또는 보수를 지불하거나 받거나 하였을 경우, 연소 노동자의 임금에 의한 지불이라고 보지 않으며, 사용자는 연소 노동자에게 지불하여야하는 임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⁴⁸⁾.

다. 처벌 제도

- 태국은 그 고유법이 인도의 마누법전의 영향과 함께 발달하였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법의 법률의 적용과 구속력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노동법의 처벌규정 안에 안전보건의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벌칙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만 있지만, 태국은 노동보호법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8개의 조문과 그 위반에 관한 벌칙이 있으며, 폭넓은 처벌규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 제47조).

47) 법 제49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에게 이하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1) 금속의 정련, 내뿜어 주조, 압연. (2) 금속압단. (3) 통상의 레벨은 아니고 대신 규칙으로 유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열, 한랭, 진동, 소음, 빛에 관련되는 노동. (4) 대신 규칙에 정해지는 유해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노동. (5) 바이러스, 세균, 미, 그 외의 대신 규칙에 정해지는 균등의 미생물에 관련되는 노동. (6) 대신 규칙에 정해지도록(듯이), 주유소의 급유 서비스를 제외한, 유해 물질, 폭발물, 가연물에 관련되는 노동. (7) 대신 규칙에 정해지도록(듯이) 포크리프트나 크레인의 운전, 제어. (8) 전기의 잘게 자른 것 또는 동력의 잘게 자른 것을 사용하는 노동. (9) 지하, 수중, 동굴, 산중의 터널이나 립 갭으로 행하는 노동. (10) 대신 규칙에 정해진 것처럼 방사능에 관련되는 노동. (11) 기계 또는 엔진이 가동하고 있는 동안의 기계 또는 엔진의 청소. (12) 지상 10미터 이상의 교통편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 (13) 대신 규칙에서 규정한 그 외의 노동.

48) 법 제52조 생활의 질과 연소자의 노동의 발전과 촉진 때문에, 18세 미만의 연소 노동자는 회합이나 세미나에 참가해, 국장의 인가한 교육 시설이나 공적·민간 기관이 조직 하는 훈련을 받거나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휴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연소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 휴가를 얻는 이유를 사전에 분명히 해, 관련 문서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용자는 이 휴가 기간중은 노동일의 임금에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연소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휴가의 날짜는 1년에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별첨 1]

관공서 업무시간 및 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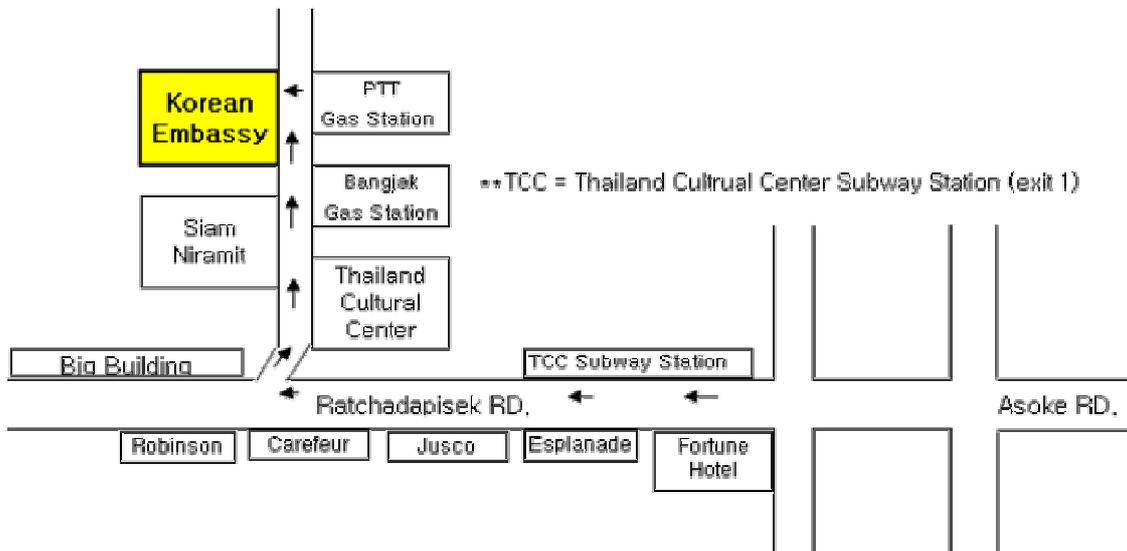
□ 태국 주요 휴일 □

날짜	내 용	날짜	내 용
1.1 (금)	NEW YEAR'S DAY (신정)	2.28 (일)	MAKHA BUCHA DAY (만불절)
3.1 (월)	SUBSTITUTION FOR MAKHA BUCHA DAY (만불절 대체 공휴일)	4.6 (화)	CHAKRI DAY (왕조 창건일)
4.13(화)- 16(금)	SONGKRAN FESTIVAL DAY (태국 전통의 설날)	5.5 (수)	CORONATION DAY (현 푸미폰 국왕 대관식일)
5.13 (목)	PLOUGHING DAY (권농일)	5.28 (금)	WISAKHA BUCHA DAY (석가 탄신일)
7.26 (월)	ASALHA BUCHA DAY (석가모니의 최초 설법기념일, 불교 사순절의 시작)	7.27 (화)	BUDDHIST LENT DAY
8.12 (목) -13(금)	HER MAJESTY THE QUEEN'S BIRTHDAY (왕비 탄신일)	10.23 (토)	CHULALONGKORN DAY (라마 5세 서거일, 태국 현충일)
10.25 (월)	SUBSTITUTION FOR CHULALONGKORN DAY (라마 5세 서거일, 태국 현충 일 대체 공휴일)	12.5 (일)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AND NATIONAL DAY (국왕 탄신일)
12.6 (월)	SUBSTITUTION FOR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AND NATIONAL DAY (국왕탄신일 대체 공휴일)	12.10 (금)	CONSTITUTION DAY (제헌일)

□ 주 태국 한국대사관 □

- 주 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20, Thailand
- 태국어주소 : สถานทูตเกาหลีใต้ประจำ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เขาขอมยเดียวกบตุนย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เลขที่ 23 ถนน เทียมรวมมิตร รชดาภิเชก หวยขวาง กรุงเทพฯ 10320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08:30~11:30, 오후 13:30~16:00(공휴일은 제외)
- 전 화 : (662) 247-7537~39 (대사관 대표), (662)247-7540~41 (영사과 직통)
- 팩 스 : (662)247-7535 (대사관), (662)247-7534 (영사과)
- 이 메 일 : koembth@gmail.com
- 약 도 : 태국어로 한국대사관은 "짜탄ต 까올리 따이" 라고 하며, "쏘이 티암 루엌 밋, 타논 라차다피섹, 후어이 꿏, 방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오시는 길



주 소: 23 Thiam 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 Kwang, Bangkok 10320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Thai Culture Center역에서 하차하여 1번출구로 나와서
 쏘이 티암루엌밋으로 약 15분정도 도보로 오시면 왼편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o 방문시간: 월~금 오전 8:30~11:30, 오후 1:30~4:00(공휴일은 제외)

□ 긴급연락처 □

- 주한 태국 대사관 Tel. 02-790-2955,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140-210
- 한국 외환은행 Tel. 02-848-1988
- 대한항공 Tel. 02-815-8911 / 아시아나항공 Tel. 02-892-5688
- 경찰 166 / 생명의 전화 02-523-2429

[참고문헌]

1. 아시아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체계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2. 아시아주요국의 경제환경과 노동이슈, 국제노동협력원, 2010
3. Country Report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ailand, 2009
4. 주 태국 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kr>)
5.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6.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go.kr>)
7. 국제노동협력원 (<http://www.koilaf.org>)

【집필자】

1. 양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